

제410회국회  
(정기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16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4.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5.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8.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9.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3)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1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1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18.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19.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20.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중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21.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06)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2)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4)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2)
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
3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
3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3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
3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40.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9)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4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4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
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4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 상정된 안건

1.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4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4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4
4.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 4
5.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4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4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 4
8.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4

|                                                                                                            |    |
|------------------------------------------------------------------------------------------------------------|----|
| 9.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 4  |
|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 4  |
| 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3) .....                                                        | 4  |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 4  |
|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                                            | 4  |
| 1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 4  |
|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                                                 | 4  |
| 1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 4  |
|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 4  |
| 18.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                                          | 4  |
| 19.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                                       | 4  |
| 20.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중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    | 4  |
| 21.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                                            | 4  |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06) .....                                      | 38 |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                                      | 38 |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                                      | 38 |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2) .....                                      | 38 |
|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4) .....                                      | 38 |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                                      | 38 |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                                      | 38 |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2) .....                                      | 38 |
| 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 .....                                                       | 38 |
|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 38 |
| 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 .....                                                       | 39 |
|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 .....                                                      | 39 |
|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                                                      | 39 |
|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 .....                                                      | 39 |
| 3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 .....                                                      | 39 |
| 3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                                                      | 39 |
| 3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 .....                                   | 39 |
| 3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 39 |
| 40.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9) .....                                          | 39 |

|                                                             |    |
|-------------------------------------------------------------|----|
|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 | 39 |
|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 | 39 |
| 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 | 39 |
| 4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          | 39 |
| 4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 .....          | 39 |
| 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  | 39 |
| 4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  | 39 |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이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차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법안들과 일부 소위 계류 안건들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4.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5.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8.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9.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3)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1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1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18.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의안번호 2124747)
19.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20.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21.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소위원장 이명수 의사일정 제1항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에서는 오영주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이 밖에 국군부대 파견연장안 관련해서 국방부 조소영 국제평화협력과장, 나오셨나요?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장 조소영 (인사)

○소위원장 이명수 또 이중과세 방지 관련해서 기재부의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병식 기재부 정책관님 나오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직 순번이 아직……

○소위원장 이명수 안 나오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논의 순서가 아니어서요.

○소위원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이명수 예.

○태영호 위원 오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의할 안건은 많은데, 우선 외교부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오늘 법안심사소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제기한 동의안 이것하고 그다음에 결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결의안 중에서도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는 그런 결의안들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상희 위원 의미 없지. 그것 되겠나……

○태영호 위원 이것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들쭉날쭉하게 돼 있어서……

○김경협 위원 선입선출, 순서대로 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河泰慶 위원 무쟁점은 언제든 하세요.

○태영호 위원 예, 이것 위에 몇 번 먼저 하고……

○河泰慶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탈북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은……

○김경협 위원 쟁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

○河泰慶 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면……

○김상희 위원 그냥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했을 때도 원칙대로 하자면서요?

○河泰慶 위원 그건 제가 양보를 한 것이고……

○김상희 위원 무슨, 그때 하태경 위원님 결의안은 전혀, 시효가 끝난 걸 결의안을 내셨잖아……

○河泰慶 위원 이게 쟁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룬 것이고……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여기에 한 대로.

○소위원장 이명수 그런데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 사정을 말씀을 여쭙보니까 대개 오전에 외교부 소관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통일부 안건을 심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오영주 차관께서 예결위 또 참석하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지

금……

○김상희 위원 순서대로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보니 대부분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김홍걸 위원 진행을 신속하게 하시면……

○소위원장 이명수 외교부 21건이에요. 21건을 2시간 정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河泰慶 위원 빨리빨리 가세요. 저도 가급적 말을 아끼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빨리빨리 가세요. 괜히 이전 말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혹시 진행 순서를 보시면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말씀을 주시든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 자료 1쪽입니다.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입니다.

이 가입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내 운송 절차 및 표준을 정한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30개 국가가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회원국이고 2023년 50차 부산 장관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협정은 총 9장입니다. 이 내용 중에 협정의 내용이 우리나라 법체제와 맞지 않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국내법과의 저촉사항은 철도공사의 약관에 협정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조약우선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국내법과 맞지 않는 사항은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그다음에 여객 운송, 수하물·소화물 운송, 운송 요금, 운송인·여객·송하인의 책임, 배상청구, 최종 조항 및 부속서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등 법제처 심사결과가 있는데요. 7쪽의 맨 위쪽에 보시면 따라서 이 협정은 배상청구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 상법에서는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가 조약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객의 생명과 건강에 가해진 위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시효 기간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는 민법에 대한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객운송협정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회원국 가입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이 됐고 협정은 이번에 가입, 장관회의 결정된 것은 금년에 됐나요?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게 다수 있다는 건 정리가 된 겁니까?

외교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동 협정 가입을 통해서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국제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법제처와.

○소위원장 이명수 정리가 다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충돌되는 건 다 해결했다는 것이요? 지금 어떤 것이요, 여기 지금 검토되는 부분?

○김경협 위원 우리 민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약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조약우선조항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부처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부처와 협의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약이 필요 없는 사항은, 철도공사 약관만 개정하면 되는 것은 철도공사 약관으

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의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입니다.

남수단과 그다음에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두 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파견 규모는 각각 300명 이내로 하고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파견지역의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파견연장 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 안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이 파견부대 연장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정부 합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매년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에 저희가 방문해서 국군부대의 활동 현황, 성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부대의 파견 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군부대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높고 현지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유엔과 현지 정부는 파견의 유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4년, 2025년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앞으로 지속해 나갈 필요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팔 사태로 인해서 레바논 UNIFIL에 파견되어 있는 동맹부대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협력해서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47개국이 UNIFIL에 파견돼 있습니다만 파병국 모두 다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감안해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 1년 연장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 남수단 파견 동의 부분에서 자꾸 지적되는 게 파견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하는 건데요. 올해 16년째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남수단은 10년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16년.

○김홍걸 위원 그런데 PKO 파견 전략 포함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검토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유엔에서 계속 파병 의사를 물어올 때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외교부가 국방부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속 검토 조정을 해 오고 있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걸 위원 최근에 논의된 사항은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UNIFIL이 16년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한 10여 개 있는 유엔 PKO 중에 한국은 저희가 갔을 때는 특전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의 주둔 지역이나 그리고 장병의 안전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UNIFIL을 대체할 수 있는 파견지는 찾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IFIL 파견은, 올해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현장을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그 방문 과정에서 그리고 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장병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파견 국가들과 다 협의했는데요. 한국의 파견이 지금

상황에서 UNIFIL이 16년이지만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데 UNIFIL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PKO 파병에 있어서 저희가 PKO 예산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고 예산은 전 세계에서 9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파병 군대를 내고 있는 것에서는 34위 정도 위치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가져가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34위 정도 파병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UNIFIL 만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길게 잔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길게 잔류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의 우리의 역할 그리고 또 인정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기 때문에 PKO 파병 문제는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유엔 측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한국은 특히 거기서 지금 민사작전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에 있는 국민들의 반응이 높고요.

○김상희 위원 조금 천천히 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오늘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말을 못 따라가고 그래.

○김상희 위원 아니, 따라갈 수가 없어.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오늘 많은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는가 싶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UNIFIL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만약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들어가고자 할 만큼 굉장히 기여하고 싶어 하는 국가입니다.

○김홍걸 위원 유엔에서는 특별히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유엔은 저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많이 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다 좋은데, 레바논 경우에 요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전쟁이 지속될지 또 얼마나 주변으로 확대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레바논까지도 이 전쟁이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때 파병 가 있는 우리 부대의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또 주둔비용이 또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외통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레바논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UNIFIL에 파견되어 있는 동맹부대는 47개국과 함께 전체 UNIFIL 사령관 휘하에 있어서 전체 유엔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배큐레이션(evacuation)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 더불어 안전의 문제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외교부 간 아주 긴밀한 회의를 하고 있고 NSC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기여와 함께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정부가 국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레바논에 유엔 차원에서 파견된 것이 우리뿐 아니고 여럿 있기 때문에 전쟁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유엔 차원에서 먼저 논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유엔 차원에서도 논의 하지만 사실 이 UNIFIL 같이 모든 PKO 부대는 안보리에서 다 떠날 수 있도록 결정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파견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유엔과 협의하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독자적으로 우리가 통보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통보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를 통한 그 루트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모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

한 인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매일 현지를 통해서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UNIFIL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어져 있는 임무가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UNIFIL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는 역할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지금 너무 빨리 우리 군대를 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되 16년 동안 기여해 온 한국의 입지, PKO를 통한 기여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에서 정부가 잘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상황이 어떤어떤 악화된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홍걸 위원** 단계적으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어떤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16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말하자면 중동전이 확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있는 국면인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김상희 위원** 사실인데 지금 유엔에서는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평화유지군의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역할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유엔 내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엔도 상황이 이럴 때는 뭔가 그 상황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활동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16년 동안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활동과 지금의 상황에서의 활동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 파병된 분들의 안전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해질 상황이 있는데 유엔에서는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뭐가 변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유엔에서는 PKO 활동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UNIFIL의 사령관의 보고체계를 따라서……

○**김상희 위원** 아니, 지금 이·팔 전쟁 상황 속에서 유엔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레바논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UNIFIL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현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김상희 위원** 할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유엔에 UNIFIL 사령관이 데일리(daily)로 매일 사무총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무총장은 필요시에 안보리에 나가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UNIFIL이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임무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김상희 위원** 지금 임무는 똑같은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아직까지는 그러한……

○**김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지금 임무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정전을 감시하고 그리고 헤즈볼라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블루라인(blue line)을 통해 가지고 정전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김상희 위원**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계속.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 그런데 지금 터지고 있는 쪽은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터지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헤즈볼라가 있는 쪽에서의 간헐적인 이스라엘과의 교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UNIFIL에 대해서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사실 그것을 예방, 말하자면 미리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엔의 역할이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헤즈볼라 그 자체의 예방의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여러 나라들이, 관련돼 있는 아랍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력을 통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미국도 계속 블링컨이 가서 이야기하고 바이든이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정치적인 협상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UNIFIL 자체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높다고 유엔이 판단한다면, 왜냐하면 UNIFIL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유엔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사무총장의 임무고. 그렇다면 당연히 UNIFIL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국가들에게 사전에 알려져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데일리로 보고를 받고 있고 국방부도 UNIFIL에 파견돼 있는 동명부대로부터 데일리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엔사무국, 유엔 현장 쪽에서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은 가자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확전이 UNIFIL로 들어올 때는 누구보다도 먼저 유엔과 저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유엔에서는……

○**김상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핵심적인 말씀을 너무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과 임무, 말하자면 유지하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유엔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안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령관……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평화유지군이 그쪽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일차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전쟁이 별로 없었을 때의 상황과 전쟁이 있었을 때의 상황은 다르다 이거지요, 역할이.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 그런데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하나하나 안보리 결의……

○**김상희 위원** 그 사람들의 안전만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안보리 결의 사항입니다,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변하지는 않느냐?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하나하나 안보리 결의 사항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유지군의 임무 사항을 바꾸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회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평화유지군의 안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안전에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확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임무 범위 내에서 UNIFIL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저는 유엔사무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유엔의 판단 속에서 아니더라고 판단하면 각자가 자기 군대는 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혹시 뺄 데가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없습니다. 그런 논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조금……

○**소위원장 이명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호 위원** 딱 이 문제는 아닌데 유엔 회비 분담금 순위에서 우리가 아홉 번째라고 했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태영호 위원** 그런데 PKO 파견에서는 우리가 34?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닙니다. PKO 파견의 군대 규모(troops)는 군인 숫자는 34, 예산은 9위.

○**태영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9위인데 순위 34라고 하면 그 이유는 유엔에서 요구가 없어서 우리가 34인지 아니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하지 않아서 34위인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대개 보시면 PKO의 예산 쪽에는 선진국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PKO의, 영어로 트루프 컨트리뷰팅 컨트리(troop contributing country)라고 하는 것은 다 개도국입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들이 갔을 때 보전율이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금이 적은 나라에서 보내게 되면 여기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돈을 받아 가듯이 PKO 군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국가의 예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적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쟁도 겪었던 나라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트루프는 가 있는 게 좋겠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감 없이 PKO 업무에 대해서 유엔에서의 역할이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소 수준의 트루프 컨트리뷰팅 국가로서 한 30~34위 정도까지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외교적·국방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왜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16년 동안 저희가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과 일정 정도 규모의, 지금 저희가 300, 300, 600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하나, 중동에 하나가 가장 격전지에.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 그다음에 유엔본부 내에서 고위직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진출 이런 데 실제 우리가 남수단이나 레바논에 파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도움이 됩니다.

○**태영호 위원** 나는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때 이것이 표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PKO 예산 많이 내는 것.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저희도…… 몇몇 선진국들이 UNIFIL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는 선진국들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거기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보리뿐만 아니라 유엔 내에서의 우리 위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유엔 구조 내에서 회비 분담 순위라든가 병력 지원 규모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위직에 들어가 있는 자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괴리가 생기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PKO 고위직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장에서, 저희 군대 나간 것도 있지만 사령부에 개인 파병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령부 자체의 작전부라든지 이런 데 군인 파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엔 파견 문제는……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여한 데 비하면 돌아오는 리턴(return)이 너무 적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외교부나 국방부 차원에서의 무슨 노력이 있는지요?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職) 차지하는 것도 적고 홍보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거든요.

○김상희 위원 너무 많이 내네, 9위면.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니요, 그것은 정규 분담금이라서 저희의 국력에 따라서 내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능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영어를 정확하게 많이 봐야 되고 시험도 있고 또 유엔에서는 2개 언어를 하게 합니다. 영어, 불어, 영어 외의 공용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데 최근에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말씀하세요.

○김경협 위원 남수단이 10년 그리고 레바논이 16년 그런데 이걸 사실 언제까지 계속 파병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종료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종료할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종료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라도 정한 게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 기준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전체 유엔 PKO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가겠다는 건 있고요. 대개 모든 유엔 PKO 미션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이 어느 정도 파병이 운영이 되면. 예를 들면 라이베리아 미션이 얼마 전에 종료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유엔 차원에서

여기는 더 이상 유엔의 임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종료하는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 두 부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지금 파병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 종료 여부를 유엔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매년 어떤 평가라도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매년 유엔 PKO 회의에서……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유엔에서의 평가 자료들을 가지고 안전성이나 실효성 문제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평가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어느 시점에는 종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그냥 방치하듯이 내버려 둘 필요는 없잖아요. 매년 계속 반복할 수도 없는 거고, 갱신을.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유엔 PKO 관련 안보리 결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매년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혹시 시간 배분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18쪽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1974년에 서명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정 미이행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국내 자원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협정이 종료되고 대륙붕 경계확정 문제를 국제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 구역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구역이 경계 미확정 상태로 있게 되므로 한중일 간에 대륙붕 경계확정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정의 종료는 새로운 동중국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의 안정성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약법 해석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의안의 문구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을 산업부와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쪽에 보시면 일단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큰 문제는 없고요. 객관적인 팩트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정부가 한일 간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양국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 재개를 목표로 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국 간에 동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현안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급적 외교적인 논란이 없는 정확한 표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문구를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별로 이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슨 내용을 협의하셨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외교적 사안이라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레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어떤 논의를 했다는 말씀은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레벨에서, 특히 올해에도 다양한 레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빨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아니, 그전에도 사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협력이 잘 된다고 계속 선전해 왔는데 정상 간에 이런 것 왜 논의를 못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의 기업들이 경제성 부족을 들어서 하지 않겠다, 좀 어렵다,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이 협정 이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홍걸 위원 아니, 그게 일본 정부 측 핑계인 것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데 일본도 기업이 갖고 있는 강한 입장을 일본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억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억지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일본 측 태도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돈 다 대고 기업 끌고 들어가서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도 거부했고, 그게 꼭 일본 현지 기업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일본에 법인 세우고 조광권 달라 해도 되는 건데 그것 자체도 일본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대기가 싫다, 이 협정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 시간 끌기

하겠다는 티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 현실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빨리 조속하게 입장을 변경하고 공동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희 외교부에서 가지고 있고 여러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김홍걸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조용히 하시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외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민감한 사안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용하면 그냥 조용히 흐지부지 끝나 버리고 우리 권리를 놓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년 남았지 않습니까, 해지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자꾸 시끄럽게 만들고 국제 문제화시키고 일본이 이 문제를 적당히 그냥 덮어놓고 묻어 두고 가겠다, 시간만 끌겠다 이렇게 못 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본 정부 도와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 내에서, 외교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국장급이라든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맞게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정상급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일본 측의 조약 종료 통보가 올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과장급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지금 주무부처가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주무부처는 외교부입니다.

○김홍걸 위원 산자부하고는 공동으로 검토한 건 있고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당연히 정부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여기 보면 29조 요청 시 협의라

는 규정은 미이행 위반 여부에 대한 진단이 명확할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이것을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24조를 불이행하고 미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조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미이행 내지는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협의하고 있으니까……

○김홍걸 위원 요청이 있었는데 협의 안 한 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다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위반이다라고 할 텐데 사실 공동위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부분을 딱 지적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김홍걸 위원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대륙붕 문제를 논의하다가 일본하고 협정을 맺게 된 그 때까지만 해도 한일 대륙붕 문제가, 7광구 문제가 우리 쪽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주장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된 것인데 그 후로 국제법적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일본이 시간을 끌고 있다 나중에 협정이 파기되면 대부분 이 대륙붕은 우리 거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보고 한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당연히 저희도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많은 위원님 말씀하신……

○김홍걸 위원 국제재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다 하는 건 인정하시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기본적으로 국제재판을 가게 되면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측면이……

○**김홍걸 위원**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재판을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승패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홍걸 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영토 분쟁 같은 건 조용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질 가능성이 많은 건데 중국 문제 그것도 좀 고려는 하고 계신가요?

중국이 서해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바다에서 시추 이런 걸 시작하고 있고 한일 간 협정이 끝나 버리면 그 한일 대륙붕에 대해서도 자기네도 영유권이 있다 하고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점 고려는 하고 계신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이럴 때도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중국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데 한미일 협력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럴 때 미국도 나서서 거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미국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

○**김상희 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산자부 쪽에서 외교부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소리를 오히려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이 7광구 문제를 빨리 개발 협정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산자부 쪽에서 들려 옵니다, 거기 관련 있는 공직자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데 다양한 레벨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얘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것과 관련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 좀 걸리적거려서 제대로 해결도 안 되면서 장애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레벨로 협의하고 있다고 해서 공개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보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레벨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것도 특별히 지금……

○**김상희 위원** 우리 외통위에서도 몇 번, 한두 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수정의견 24조를 불이행한 것으로 딱 집어서 그것만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용선 의원안에는 4조, 29조, 30조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통으로 해서 불이행으로 용어를 좀 바꾸더라도 이것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24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 취지하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일본은 저도 지난번에 국감도 갔었고 일본 측 분위기는 어쨌든 탐사 시추해 볼 가치가 별로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김상희 위원** 경제성보다 자기네 이해관계.

○**河泰慶 위원**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는 더 많은 데가 있는데, 내가 그때 일본 쪽에 알아보니까 일본 바다는 되게 넓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밀린다는 건 일본 측 판단인 것 같고 우리는 산자부나 여기서 주변 탐색이나 해 봤나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실제로 있는 건지 얘기 해 보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산자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저희는 예전 2000년대 초에 공동 연구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된 연구소나 우리 석유공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하긴 석유공사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걸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아까 29조, 30조는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 국장급 대화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협정의 미이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불이행이라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굳이 넣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상희 위원** 어쨌든 협의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별로 협의를 안 한다, 외교부가. 그렇기 때문에 29조, 30조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의 요청해도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그 소극적인 것을 사실은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황희 위원** 일본은 돈을 하나도 안 낸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우리가 시추하고 그냥 같이 하겠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안 해요.

○**河泰慶 위원**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해 본 적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황희 위원** 그게 아니라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돈 안 내고 우리가 해도 된다고.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본에 제안했다고 김홍걸 위원이 이야기하셔서 그런 제안까지 했는데 일본이 노한 게 사실이라고.

○**김홍걸 위원** 두세 차례 언론보도까지 났었어요.

○**河泰慶 위원** 언론보도 다 믿을 수 없으니까.

○**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막 여야, 정부 이런 사안이 아니라 2년 남았는데 이것은 기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예요. 그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여야정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2년 지나면, 만약에 2년 지나서 일본이 이렇게 본색을 들이대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기 그런 관성이 있잖아요. 내가 보면 다 배임이야. 2년 뒤예요.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왕 한 것을 좀 철저하게 최소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애네가 말을 못 할 정도로 수위를 높여 가지고 압박하고 밀어붙일 정도가 돼야 그래야 우리 논리가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 가서도 불리하고 재판 굳이 안

가고 정부 밖에서도 외교부가 욱먹게 생겼어요. 다들 나와 가지고 제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 이삼 년 뒤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명분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河泰慶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달 말에 저하고 김홍걸 위원하고 또 일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 와야 될 선물 리스트 이러이런 것 좀 주라라고 좀 정리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정부 내에서 이 부문을 우리의 국익이나 또 한일 관계 또 중국을 고려한 굉장한 외교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에 있고 또 필요한 국가들과의 협의 이런 여러 방안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최고 위급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아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위반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썼을 때, 미이행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위반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국회에서 채택하시는 결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위반보다는 미이행으로 쓰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29·30조의 경우에 내용이 ‘일방당사국 요청 시 당사국은 협정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공동위는 아니었지만 협의를 해 온 게 있으니까 29조를 불이행으로 적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30조도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실한 조치는 없지만 하나라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4조만 불이행으로 하고 이 부분들은 뺀 것이고요.

다만 결의안 전체 내부에 있어서 미이행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안으로서는 설명을 드린 것이라 하고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 그런데 29조는 말씀이 맞는데 30조는 조문이 필요한 모든 부분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이행이나 불이행이 맞아요, 30조는. 29조는

차관님 말씀이 맞더라도 저는 30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협정의 취지 자체가 공동개발을 그때 70년대에 해 가지고 80년대 공동개발을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굴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광구 권리를 주고 나서 조광권자에게 뭔가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칭하다 보니까 여기서 현재 조광권자가 일본에 지정이 돼 있지 않고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딱 얘기했을 때는 약간 반박하기가 쉬운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딱 타겟을 24조 여기서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

○**김홍걸 위원** 지금 저하고 황 위원님 질문한 것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우리 쪽에서 ‘우리가 돈 대서 탐사 시추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반씩 나누자. 일본은 그러면 하나도 리스크 없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했는데도 일본이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제안하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석유공사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또 정식으로……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한 적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예전에도 그런 것이 거론이 되고……

○**김홍걸 위원** 일본하고 논의한 적은 있었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그런 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어떤 정책을 정해서……

○**황희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제가 답변을……

○**김홍걸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 측 의도가 수상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리스크 없이도……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동 건을 포함해서 위원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고 하니까 오늘 말씀 주셨던 그리고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이 조금 더 긴밀하게 하면서 일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 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조금 전에 황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시거나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몇 년 후에 협정 깨지고 일본이 한일 대륙붕 다 우리 거다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중국이 끼어들어 가지고 한국은 밀려나고 일본, 중국 간의 공동개발로 돼 버린다면 정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잠깐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의 무슨 외교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국회의 결의안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팩트가 잘못된 거라든가 또 잘못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로서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된 것, 74년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60년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 7광구 했을 때 얼마나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기대가 컸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말 우리는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세계 결의안이 나가고 그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협상도 하시라고요. 자꾸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태의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정말 국제 관례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만 지적을 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이용선 의원님이 낸 결의안을 그대로 하면서 지금 보니까 29조 당사국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에 관해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협의를 안 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정부는 부담스럽지만 우리 국회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는 우리 이용선 의원님 원

안대로 약간 문구만 조절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저는 부담스럽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외교의 주체가 전 세계로 글로벌화돼 있는데 정부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원도 외교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이야기를 했다가 현장에 가서……

○김상희 위원 과도하지 않아요.

○河泰慶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과도한 면이 있어요.

○김상희 위원 어떤 부분이 과도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河泰慶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저는 무리하게 넣는 것 반대하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국회의원도 정부랑 똑같이 외교한다고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문구가 들어가야지 굳이 외교적 부담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7광구 개발 관련된 탐사시추 비용 전액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외교부에서 먼저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가면 또 굴종 협상, 불공정 협상,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걸 공론화해서—민주당은 어쨌든 반일 성격이 강하니까—외교부에 요청을 하면 수용하는 형식은 저는 좋다고 봐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데 아무튼 외교부에서 먼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반일 성격은 아니고……

○김상희 위원 말 좀 조심해서 하세요.

○김경협 위원 주권의식이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반일 성격이 강하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요.

○河泰慶 위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김상희 위원 정정하세요. 속기록에서 빼세요.

○김경협 위원 종속적이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河泰慶 위원 이걸로 싸우고 싶지 않고 죽창가 들었던 사람이 누군데 그것부터 반성해야지……

○김경협 위원 누가 그러는데 민주당이 죽창가 불렀나요? 말을 왜 그렇게 하고 그래요.

○河泰慶 위원 그것은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지요.

○김경협 위원 민주당이 언제 죽창가 얘기했어

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만하시고……

○태영호 위원 김경협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김경협 위원 민주당이 죽창가 부른 적 있어? 언제 죽창가 불렀어, 얘기해 봐.

○河泰慶 위원 큰소리 안 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얘기해 보라고.

○河泰慶 위원 정회하려면 하고……

○김상희 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河泰慶 위원 무슨 거짓말을 해요.

○김경협 위원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걸핏하면. 민주당이 죽창가 불렀나고.

○河泰慶 위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정부예요?

○김경협 위원 민주당이 죽창가 불렀어?

○河泰慶 위원 일심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적 있어요?

○김경협 위원 거기 다 당원들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

○河泰慶 위원 죽창가 부를 때 거기에 비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민주당에서, 똑같은 거지.

○김경협 위원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조심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만하시고……

○태영호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김경협 위원 저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협정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부분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할 것이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제가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부분 때문에 여기 공동개발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일본이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은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는……

○김경협 위원 아니, 일본의 민간 기업 중에서 할 기업이 없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일본의 얘기를 다시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협정 기간이

종료되면 이 부분의 대부분을 일본이 독자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이나 이런 겁니다.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제법상 각 국가들 간의 해양 권원이 겹치는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판다든가 굴착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협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이 구역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애긴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예, 협정이 종료가 되면 다시 해양경계 획정이 필요한 미경계, 경계 획정이 안 된 수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도나 이렇게 죽 나오는 것들에 의하면 협정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지금 그 의도를 가지고 협의를 계속 지연시키고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주요한 주장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협정 기간이 종료되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자 개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정부에서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서 안심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래야지 실제로 일본과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일본이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협상에 좀 더 성의껏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제가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확립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까지 무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국내에 이 문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팩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국제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이 결의안을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사실 국회에서 결의한 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필요가 없겠지요. 어차피 외교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조약을 체결하든 합의를 하든 기간에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국민적인 힘 또는 국회의 힘, 국회의 요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좀 더 힘 있게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 채택하시는 결의이고 또 양국 간의 법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위반보다는……

○김경협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수정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반보다는 미이행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것은 국회의 체면도 있으니 국제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동의하고, 어찌 됐든지 어떤 국회의 요구나 결의안을 가지고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계속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일단은 외교장관회담이 되고 나면……

○김경협 위원 여기에 실제로 의제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한중일에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이명수 뭐 말씀하시겠어요?

○태영호 위원 예.

차관님, 그러니까 차관님이 입장을 조금 더 명백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결의안 취지에는 동의한다 이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태영호 위원 글썄요, 그건 동의한다…… 그러면 여기 수정의견들이 죽 나와 있는데 수정의견 중에서 차관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24조, 정부 쪽에서는 24조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야당 위원님들이 24조 외에 여기다가 29조, 30조 이걸 또 넣자는 의견인데 정부 쪽의 의견은 24조에 의하면 29조는 진짜 고려된다, 앞으로 그러면 24조와 30조……

4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구체적으로?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4조는 보면 조광권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조광권자 신청이 있어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없다는 것을 위반으로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4조는 빼자는 거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예, 4조에 대해서는……

○태영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마지막 24조 불이행 여기다가 30조 넣는 것……

24조, 30조를 불이행하는 걸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29조가 좀 고려된다면 거기다 30조 하나 더, 4조 빼고 29조 빼고 30조 넣는 것에 대해서는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태영호 위원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적 견지에서 보면 30조가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좀 명백히 말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국제법 전문가인 우리 황 국장 입장에서는 24조만 해 주시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또 생각하시면……

30조 내용은 저는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워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국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4조만 빼 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김상희 위원 4조, 24조, 29조, 30조를 위반이라고 하지 않고 미이행으로 했을 때 그게 국제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불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조. 불이행으로 돼 있어서 불이행으로 하

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위원님 4조하고……

○김상희 위원 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동시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불이행으로 해 주시면 저희……

○김상희 위원 불이행으로 하면 이 부분이 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불이행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조는 빼 주시고.

○김상희 위원 용어를 좀 바꿔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4조는 빼고……

○김상희 위원 4조 빼고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4조 빼고요. 29조……

○김상희 위원 4조를 왜 빼야 되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왜 신청을 안 했냐고 신청을 하도록 장을 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지……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그런데 4조에는 허용을 해야 된다, 영어가 원본인데요 오서라이즈(authorize)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허용을 안 해 주면 위반인데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안 한 것은……

○황희 위원 우리도 안 했어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아니, 저희는 석유공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신청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연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4조를 위반이다, 불이행이다 말하기에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불이행으로 넣고 또 4조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황희 위원 미이행은 맞지, 그러면.

○김상희 위원 4조도 넣어야 된다니까요.

○河泰慶 위원 저는 반대고요. 위원들 이견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심의로 넘깁시다.

○김상희 위원 지금까지 얘기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河泰慶 위원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합의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김상희 위원 4조를 불이행으로 하는 것에 뭐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河泰慶 위원 외교부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상희 위원**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河泰慶 위원** 지금 위원들 간에 이견이 해소 안 돼 있고……

○**김상희 위원** 뭘 이견이 해소가 안 되어 있어요?

○**河泰慶 위원** 우리 소위의 관행이라는 게……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뭘 반대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河泰慶 위원** 저는 24조만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빼고.

○**황희 위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해요.

○**김상희 위원** 아무것도 못 해, 아무것도.

○**河泰慶 위원** 하지 맙시다. 나중에 합시다.

○**김상희 위원** 도대체 하태경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河泰慶 위원** 예의 있게 매너 있게 하셔야지요, 뭘니까 지금?

○**소위원장 이명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의원이 사실 이 문제로 저보고 국회에서 토론하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국회하고 정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그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 결의안 문안만 가지고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나 진행 과정에 의문투성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면 제가 이용선 의원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 모아서 다시 한번……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몇 분 얘기했습니까, 이 결의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좁혀졌는데……

○**소위원장 이명수** 그래도 그 내용 중에 해소가 다 안 됐거든요.

○**김상희 위원** 해소가 안 되기는요.

○**소위원장 이명수** 다 안 됐어요.

○**김상희 위원** 외교부에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용어를 좀 바꾼다든가 내용을 바꾸자고 얘기해서 그걸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조, 24조, 29조, 30조 이것 관련해서 불이행으로 할 경우, 위반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지요.

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합니까?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4조도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지금 이러니까 법적 조항……

○**김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좀 되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하도록 하자고요.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이 결의안 취지가 어쨌든 7광구 공동 탐사 빨리하라는 게 취지고……

○**김상희 위원** 빨리하라는 거지요.

○**河泰慶 위원** 어디 부분을 위반이나 불이행이나 이걸 지적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엽적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의견대로 24조 불이행 못 받고 빨리하라는 거니까 그 취지만 달성 되면 되기 때문에 큰 줄기를 잡고 가야지 여기에 조 하나를 더 넣고 더 빼고, 아무튼 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이견이 표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키시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우리 위원님이 정 문제가 된다면 4조 빼고 그냥 하세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29조, 30조 다 빼고 24조 하나만 넣고 들어가요.

○**김상희 위원** 불이행으로 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 그러면 우리 하태경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해서 4조를 빼고 처리를 해요. 몇십분 동안 얘기해 놓고 이걸 원점으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대체가?

○**소위원장 이명수** 제가 발의한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할게요. 원래 토론회 하고 난 뒤에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토론회를 못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소위원장 이명수** 요새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건대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들이 하고 해야지 이게

우리가……

○**김상희 위원** 도대체가 몇십 분을 얘기했는데 의사들이 조금 다르면 위원장님이 조율해서 가도록 해야지 이거 그냥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조율이 안 되잖아요, 지금.

○**김상희 위원** 왜 안 됩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지금 여러 가지 말씀도하시고……

○**김상희 위원** 아니, 왜 안 돼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율해서 하자고요.

○**김상희 위원** 지금 하태경 위원 얘기는 위낙에 외교부에서는 24조만 불이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토론을 쭉 해 보니까 불이행으로 할 경우는 국제법 때문에 그랬는데 국제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하태경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넣는 것은 좀 반대다 이러니까 그러면 4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불이행으로……

○**소위원장 이명수** 그런 것을 조율해서 한 번 더 심사하시자고요.

○**김상희 위원** 결론을 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법안심사 못 합니다. 도대체 위원님도 그렇고 국회 몇 년 했습니까? 나 법안심사 할 때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결론을 내서 일을 해야지 유보, 다음번에 또…… 도대체가 외통위에 법안 몇 개 있다고 이것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조정해서 가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못 해서 왔는데……

○**김상희 위원** 토론회는 토론회고 결의안은 결의안이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원래 이용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아니, 토론회하고 결의안하고 차원이 다르지. 나는 진짜 정말……

○**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얘기합니다.

이것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큰 선은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빨리 협정 종료 전에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맞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4조냐 24조냐 이것을 빼고 맨 마지막 수정의견에 ‘24조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면 된다 이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통과시키지요. 뭘 조항 4조, 24조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정부 수정의견대로 하고 통과시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 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河泰慶 위원** 정부 수정의견대로 해도 대체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한 조 더 넣으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지.

○**태영호 위원** 어쨌든 일본 정부를……

○**김상희 위원** 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위낙에 낸 안이 있는데 최대한 낸 안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4조와 29조, 30조의……

○**河泰慶 위원** 왜 우리를 이기려고 그러냐는 거지.

○**김상희 위원** 4조를 빼고……

○**河泰慶 위원** 대체가 충족되고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지.

○**태영호 위원**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목적은 다 달성했으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글썄 고집을 펴도 한도가 있지, 세상에……

○**소위원장 이명수**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더 다듬고 신중하게 의견 조정해서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김상희 위원** 문제없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태영호 위원** 아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더 다듬어서 제대로 가야지.

○**김상희 위원** 불이행으로 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조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니깐 4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넣으세요.

○**태영호 위원** 자, 그러면 4조하고 29조를 빼고 24조, 30조는 괜찮은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저희 입장에서는 30조도

빠면 좋겠……

○태영호 위원 아니, 정확히 앞으로 국제법적으로 진짜 문제 소지가 있다면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의 입장은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24조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깔끔하게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여 제안한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안한 의견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통과시키지요.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따 외통위 우리 법안소위를 계속하니까 정부에서 조정안 안을 내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하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한테 사전에 다 허락받아 가지고 하세요, 법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도대체가 국회에서 결의안 하나도 못 내요?

○태영호 위원 결의안 다 통과시키자는 건데 왜 자꾸……

○河泰慶 위원 몇 조 몇 조까지 양해 가능한지만 주면 외교부 의견대로 내가 양보할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조정안 수정의견을 지금 낸 것 말고 다시 내라고.

그러면 이따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논의 대상인데……

○김상희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외교부 입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지금 저희가 수정안 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24조, 30조 등’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상희 위원 24조, 30조 등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김상희 위원 좋아요.

○河泰慶 위원 예. 타협을 하셔야지요.

○태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하자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순서를 좀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9항 10항 11항인

데 정부에서 낸 것과 의원님이 내신 안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심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타이베이하고 한국 간의 정부 동의 법률안인데……

○김상희 위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의사일정 제9항, 10항, 11항……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11항은 아니고 9항, 10항입니다.

○河泰慶 위원 정부 제출을 먼저 하자고요?

○태영호 위원 시간 가니까 정부 제출을 먼저 하고……

○소위원장 이명수 10항, 11항은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9항, 10항.

○소위원장 이명수 9항, 10항 하면 11항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일단 다 같이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12항까지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정부가 제출한 9항, 10항, 11항을……

○河泰慶 위원 11항은 정부 아닌데……

○태영호 위원 정부 아니에요. 9항하고 10항만 정부안이에요.

○김상희 위원 9항하고 10항이에요, 정부 제출안은.

○소위원장 이명수 같은 외무공무원법 아니에요?

○김상희 위원 그런데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또 있어요. 이것은 빼세요.

○河泰慶 위원 아, 이것은 서로 병합해야 되는 거네요?

○김상희 위원 9항만 하세요, 9항.

○소위원장 이명수 9항, 10항.

○김상희 위원 9항, 10항?

아니,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이 낸 게 11항이 있으니까 병합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9항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이것은 사실상 조약이지만 법률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부재로 인해서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교섭을 실시해서 2021년에 해당 약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양측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관련 조치를 위한 약정은 당연히 조약의 형태를 띠어야 하지만 현재 대만과 우리는 조약을 맺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측 대표부 간에 민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하고 약정에다가 우리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효력 부여 방안은 본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우리나라 세법상의 일부세율을 제한하는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약정의 주요 내용을 법률 조문화하고 그다음에 약정에 관한 전문을 법률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이 법률안은 현재 긴 명칭의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제1조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약정의 이행은 제2조에 보시면 ‘체결한 약정의 이행은 별표에 따른다’ 해서 그 별표에 이 약정 전문을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별표로 이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쪽 3번에 보시면 이 약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대만은 우리나라와 6위 무역 파트너이고 100개 정도의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민이 이제까지 약정 전에는 이중과세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약정과 법률이행안을 통해서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제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동의한단 말씀이지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나오셨나요?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정병식 예.

○소위원장 이명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정병식 대만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협정 내용을 보게 되면 대만과 우리나라의 투자소득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흑자입니다. 대만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소득이 많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한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양쪽의 이익 균형을 담은 협정 내용이어서 저희로서는 내용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별 이견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워낙 대만이 국제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 비슷한 법률안들이 꽤 있나요, 우리가 대만하고 조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이렇게 법률안으로 만든 다른 사례?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니요. 민간항공협정은 있었는데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대만 민간항공협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정 형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관계법령이 있어서 그게 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법령이 있어서, 약정을 하더라도 기존 법령이 있어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것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어쨌든 사례는 없네요? 최초의 사례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지금 같은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처음입니까? 그래요. 그것도 희한하네요. 대만하고 뭐 많이 있을 텐데 처음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30여 국가들이 하고 있고, 각각의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와 같이 법령으로 한 나라도 있고 자기들 법이 있으면 그대로 법령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은……

○**김경협 위원** 우리 6항은 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6항?

○**태영호 위원** 6항 아직 안 들어갔어요.

○**김경협 위원** 아까 하던 거……

○**김상희 위원** 4항 합의했지.

○**소위원장 이명수** 아, 4항은 다시 문안을 조정해서 문안을 가져오면 이따가 다시 보자고 그랬지요.

○**河泰慶 위원** 내용은 합의했어요.

○**김상희 위원** 내용 합의했어요. 아직 방망이 다 안 쳤으니까, 한꺼번에 칠 거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4항은 아까 다시 문안 조율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김경협 위원** 아니, 앞부분에 한 것은 의결했어요?

○**김상희 위원** 의결했나?

○**소위원장 이명수** 했습니다. 쳤어요.

4항은 문안 정리해서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고요.

의사일정 제9항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11항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그러면 10항과 11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0항 주요 내용입니다.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또는 참서관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직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권 등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인사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에 이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문 정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외무공무원 직위에 포함되는 재외동포청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참서관급 이상, 실장급 이상 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은 참서관급 이상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 시 추천 권한 그다음에 적격심사 요구 권한,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청장으로서 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외무공무원법에는 현재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인용하는 대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의 당연 퇴직 사유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쪽 보시면 전부 다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62쪽에 보시면 당연퇴직 조항이 있습니다. 제1호가 있고 개정안의 1호로 바뀌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11항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조정식 의원안은 특임공관장 임용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임공관장 임용과정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서 이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자격심사를 강화해서 특임공관장 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인사 임용과정에 국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또 현재도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또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현재 특임공관장 현황이 있습니다. 총 31명의 현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최근 특임공관장 비율이 현재는 한 18%, 20% 정도 내외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먼저 10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외무공무원에 적용되는 인사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중에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공관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심사하여 특임공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미 외교부 및 타 부처 고위공무원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임공관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임용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공관장 후보 임명 자체가 고도의 외교활동인 점까지 감안한다면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자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의 부적격 판정 시 공관장 임명이 불가능하게 법률을 개정할 경우 자칫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앞으로도 공관장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충실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 특임공관장 중에 외무공무원 출신 아닌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숫자가?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외교관 출신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걸 위원 예, 외무공무원 아닌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특임공관장 중에?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제가 숫자는 파악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외부인사 비율 3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지금 외부인사가 특임공관장이 현재는 한 20% 되는 것으로 아까 통계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김상희 위원 외부인사, 특임공관 외부인사……

○河泰慶 위원 특임공관장 뜻이 외부의 외교부가 아닌 사람들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외부인사를 특임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외부인사를 임명하시는 겁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지금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정식 의원안 할 때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특임공관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건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차관급 이하의 고위공무원입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적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국가공무원법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특임공관장도 일정 정도의 적격심사를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지금 이미 적격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데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외교부 그리고 타 부처 고위공무원—행자부나 이런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아주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미비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김홍걸 위원 미국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외국 대사로 나가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청문회 거치고 인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미국의 법은 저희 대사 임용 법안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임명하는 법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홍걸 위원 아니,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교부가 차관급 이하입니다. 차관급 이하의 특임대사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회에서 상임위원들이 그걸 같이 체도를 보완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 제가 보건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관장이라는 게 해외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직접 대표하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이게 다른 고위공무원직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임공관장 임명권은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처럼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지 국회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걸 한다 이것은 별로, 그래서 원래대로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특임공관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엄격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건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심사할 건가 이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되고 여기까지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것은 저도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자격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외교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한 20% 지금 외부 사람들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해서 지금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는 그대로 하시고 특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 우려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이분들이 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말하자면 국익과 국가의 위신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뽑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국회 상임위 추천은 빼고 나머지, 인사혁신처장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외무공무원 추천하는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외교부가 지금 볼 때, 여기를 조금 해서 국회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좀 빼고 지금 있는 공관장과 별도로 특임공관장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나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조금 막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해서 지금 하면 어떨까요?

○河泰慶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안……

○김상희 위원 아니, 새로운 법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걸 수정하는 거지요.

○河泰慶 위원 아니, 수정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 수정 가능하지요, 그것 빼면.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위원님, 그 수정안은 지금 당장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외교부랑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의 공관장 심사위의 자격심사와 조금 다른 형태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위원님 말씀 취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河泰慶 위원 지금 당장?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의견들이 맞으면……

아니, 이걸 빼자는 거야.

○河泰慶 위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도 공동발의할 테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이걸 빼자는 거야. 국회 것만 빼면 되지 않냐 이거지.

○河泰慶 위원 아니,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상희 위원 국회 추천만 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상?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아직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공관장 심의 자격심사와 이 심사의 법적 격과 그다음에 조문 위치나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딱 들어가는 건 현재로서는…… 제가 그래서 그걸 조율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세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현재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외교부의 실장급과 타 부처 공무원 3명인데요. 인사혁신처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 행정안전부·법제처의 고위공무원 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외교부장관이 저기 하나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니요. 외교부차관이 합니다, 2차관.

○**김경협 위원** 차관이 위원장이고?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러니까 재외공관장을 해 본 실장들, 1급 중에서 재외공관장 경험이 있는 외교부의 일정한 실장들 5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행안부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들이 와서……

○**김경협 위원** 거기에서 특임공관장들도 같이 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같이해서…… 왜냐하면 특임공관장들도 저희 공관장만큼의 역량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이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같이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부대의견 하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말씀한 대로 그 조문 위치라든가 그걸 종합해서 한번 다시 심사하도록 하지요.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심사를 하시지요.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황희 위원** 미국 대사도 특임공관장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김상희 위원** 그렇잖아. 특임공관장이지. 그러니까 지금 신중하게 하자는 거지.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략 우리 외교부 소관 법률에 대해

서 한 12시 반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적으로?

○**河泰慶 위원** 저는 지금 좀 나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 대사들하고 미팅이 있어 가지고, 결례여서……

○**소위원장 이명수** 예.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여권법, 12항만 간단하게……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2항 심사하는 것? 시간이 어떻게 될 건가……

○**김상희 위원** 아니, 지금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하태경 위원님은 가셔야 되고……

○**河泰慶 위원** 더 하실 분은 더 하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태 위원님은?

○**김상희 위원** 더 있겠습니까. 이것 해요. 하시지요.

○**태영호 위원** 12시 반까지 하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에 의원 대표발의한 건데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80쪽 여권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데 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도록 해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민간 본인인증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신분증 이미지를 통한 도용의 피해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정에 의원은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또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증 이렇게 해서 같이 한꺼번에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1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문은 위배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취지가 분명하게, 여권하고 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부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여권법이 있고요. 현재의 주민등록법입니다. 현재의 주민등록 보시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가 현재 법이어서 여권법도 동일한 형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우리 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타인 여권의 사본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어서 ‘부정하게’라는 문구가 꼭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김상희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여권법……

○김상희 위원 아니, 아까 결의안 우리 한 거 먼저 통과시키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건 나중에 정리해 오면……

○김상희 위원 아직도 정리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정리하는 데 오래 걸려요?

○소위원장 이명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수정한입니다.

○김상희 위원 수정한 대로……

○소위원장 이명수 정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리됐나요?

○통일부국제법률국장 한준식 정리된 자료를 좀 배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외교부 의견이지요, 이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외교부 의견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협정에 따라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협정 제24조·제30조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입니까? 이렇게 정리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상희 위원 수용합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잠깐만……

수정 의견과 이용선 의원안 원안 거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이걸 뺀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딱 정상회담이라고 박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상희 위원 아니, 워낙 그게 팩트인데요.

○태영호 위원 예?

○김상희 위원 팩트라고요.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그렇게, 차라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박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걸 왜 빼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태영호 위원 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 가지고 정상회담 의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계속 이거 따질 것 같은데요.

○김상희 위원 안 따져요. 결의안으로 한 건데 뭘 물어봐요.

○태영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이런 결의안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결의안을 많이 냈거든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정상회담 등’ 회담 명칭을 거기다 박아 넣어서 결의안 내 본 적이 없는데요.

○김상희 위원 필요 없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외교부 입장에서는 외교 교섭의 자율권과 여러 가지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정부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정상회담이라고 딱 박아 넣을 필요가 뭘 있을까요?

○황희 위원 뭘 필요는 뭐가 있어요?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상희 위원** 아니,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왜 빼야 돼요?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상회담 등’이라고 박아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예요, 나는. 정부의 외교 협상의 자율권을 높이고……

○**황희 위원** 너무 심기 관리하시는데요.

○**태영호 위원** 아니, 심기 관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김상희 위원** 태영호 위원님, 아까 합의했으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그 정도로 정부 배려해 줬고 대통령 배려해 줬으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우리.

○**김홍걸 위원** 그건 합의한 건데 그냥 넘어가시지요.

○**태영호 위원** 아니, 이때까지 결의안에 이렇게 정상회담이라고 박아 넣은 결의안이 없었어요.

○**김상희 위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안 한다니까. 이 결의안에 있는 거 가지고 ‘왜 결의안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안 움직이냐’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한 대로 그냥 가세요.

○**태영호 위원** 아니, 이거 결의안이니까 이게 문구를 똑바로 하되…… 바로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결의안이 있었느냐, 정상회담이라고 양국 관계에서 찍어서.

○**김상희 위원** 결의안을 하도 많이 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황희 위원** 이런 성격의 결의안이 없어서 그러지 이거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다양한 차원의……

○**태영호 위원** 이거 빠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황희 위원** 아니, 외교부가 문제 삼지 않는 걸 왜 위원님이 문제 삼으세요?

○**김상희 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걸……

○**태영호 위원** 내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니까 정부라고 들어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들여다보고 그게 마음에 걸리세요?

○**황희 위원** 정부가 이의 제기를 안 한 거를……

○**태영호 위원** 아니, 결의안에 이렇게 정부라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정상회담이라고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아이고, 세상에……

○**황희 위원** 정부가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것을 왜 굳이 위원님이……

○**김상희 위원** 그만하세요, 이제 좀. 아이고, 정말.

○**김홍걸 위원** 외교 열심히 하신다는 대통령인데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다양한 차원의 협의를 통하여’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 정부라고 들어갔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러면 다 포함되거든. 그런데 뒤에다가 또 ‘정상회담 등’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뺄 필요가 왜 있어요? 대통령한테 부담 줄까 봐 그런 거예요?

○**태영호 위원** 글썽 나는 이렇게 양국 관계 결의안에다가 정상회담을 박아 넣은 것을 난 진짜 처음 봐요.

○**김상희 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황희 위원** 우리 결의안이 위원님 볼 때 어마어마하게 생각되는 건 아니시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중요한 건 외교부 입장이지요,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김상희 위원** 이거요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적인 자율권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없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원장 이명수** 지금 태영호 위원님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하여’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 결의안이니까 같이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태영호 위원님, 아까 하태경 위원님 있을 때 다 합의한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영호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거 이렇게 정부라고 들어갔는데 뒤에다가 ‘한·일 정상회담 등’이라고 또 박아 놓은 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김상희 위원** 그냥 속기록에만 남기세요, 태영호 위원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태영호 위원님이 왜 갑자기 그걸 들고나오셨습니까?

○태영호 위원 아니, 내가 읽어 보니까……

○김상희 위원 외교부에서 지금 태영호 위원님한테 또 의견을 주셨습니까?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런 건 없고……

○김상희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세요.

○태영호 위원 내가 보다가 이거 찾아서, 정부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정상회담이라고 또 들어가 있어서……

○황희 위원 아니,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하셔야지 왜 그걸 굳이 빼라고 그래요? 나는 국회에서 당연히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이런 것은 국익을 위해서는……

○태영호 위원 글썄 그건 다 동의하는데……

○황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태영호 위원 여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라고 들어갔으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다가 ‘한·일 정상회담 등’이라고……

○황희 위원 그걸 굳이 빼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차관들끼리 결정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김상희 위원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회담에서도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정부에다가 외교적 자율권을 주자는 거지, 장관에 대한 것을 하든.

○김상희 위원 자율권 준 거예요. 이건 그냥 ‘대통령 등’이에요.

○황희 위원 ‘등’이면 자율권이지요.

○김상희 위원 정상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등’, 다양한 채널로 하라는 거지.

○황희 위원 위원님, 이거 2년 뒤에 일본 국익에 반영되느냐 한국 국익에 반영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 주는 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 정부가.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진행시키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 얘기는 들어 줘야지요, 일단 충분히.

○김상희 위원 진행시키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이명수 글썄요, 정부 속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닌데 명시를 하느냐 그냥 삭제할 하느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계신데 일단은 우리 소위에서는 넣어서, 일단 외교부가 동의했으니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전체 상임위에서 다시 거론할

문제는 별개로 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구보다도 이것이 경계 확정 문제라든가 앞으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 이런 큰 흐름으로 봐서 현재 이 제기 자체의 취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생기는 다른 파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걱정이에요.

○김상희 위원 그건 외교부가 잘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임위에서 이런 걸 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 하는 걸 했어야 돼요. 결의안 가지고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사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선 의원이 같이 한번 해 보자,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오고 이해관계인도 오고 다른 부처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서로 미루다 보니까 못 한 거예요.

○김상희 위원 공청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일단 여기서 양해해 주시지요, ‘정상회담 등’ 들어간 거, 어차피 정부라고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상임위 다시 논의해서 하더라도. 저는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태영호 위원 아니, 글썄 전반적으로 하는 데도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이 협정 종료일이 다가오니깐. 지금 문구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정부라고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결의안에, 이게 국회 결의안인데 거기다가 정상회담이라고 박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빼느냐 넣느냐 그러는데 나는 여기다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필요가 있으니까 넣었으니까요 본인의 결의안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 아니, 글썄……

○황희 위원 결의안은 정부의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게 결의안이잖아요. 그럴 거면 결의안을 뭐 하러 냅니까, 국회에서?

○태영호 위원 난 지금까지 이거 양국 간에 결의안들 여러 건 하는데 정상회담 등에서 이런 걸 얘기하라 하고 정상회담이라고 찍어 넣은 결의안은 처음 봐요. 그런 결의안이 있었어요?

○**황희 위원** 그런 결의안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양국 간에 문제가 되는 결의안이 있으면……

○**김상희 위원** 그거는요 태영호 위원님은 처음 보셨지요? 결의안 한번 다 훑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태영호 위원** 그렇게 훑어보자고요. 일본과의 결의안이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난 지금까지 우리가 야당 때도 있었고 지금 여당 때도 있는데 일본 정상회담이라고 결의안에 써 있는 건……

○**황희 위원** 그러면 국회가 결의안을 뭐 하러 냅니까?

○**태영호 위원** 아니, 정부라고 찍었잖아요, 정부.

○**황희 위원** 국회가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정부하고 양국 정부에다가, 그것도 고위급 양국 정상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태영호 위원** 그렇지요. 여기다 딱 정부라고 했는데 그 뒤에다 또 정상회담이라고 넣어서……

○**황희 위원** 정부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아니, 정상들이 관심 갖고 하면 좋은 거지, 그게.

○**황희 위원** 과장급끼리 얘기하고 실장급끼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죽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결의안까지 내겠습니까?

○**김홍걸 위원** 대통령이 나서서 한일 관계 좋아졌다고 그러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뭘 그렇게 걱정이세요?

○**태영호 위원** 나는 이거……

○**황희 위원** 지금 양국의 강제동원 이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가지고 물컵에 잔을 받을 채우고 저 쪽은 안 채우고 이러는 판에 이 정도는 해야지요. 왜 그거를 가지고 입법부가 행정부에다가……

○**태영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부에 외교적 자율권을 많이 주는데 여기다가 정부라고 우리가 찍어 넣었기 때문에 그거면 족한데 왜 여기다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또 정상이라는 말을 넣느냐.

○**황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자율권을 주니까 물컵의 잔을 못 채운 거 아닙니까, 장관끼리 하더라도 그러는 판에, 지금.

○**김상희 위원** 태영호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구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태영호 위원님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의결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태영호 위원** 아니, 제가 의결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고……

○**김상희 위원** 의결하시지요, 그러니까.

○**태영호 위원** 이 문구를 빼자니까, 이 문구를.

○**황희 위원** 왜 빼자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왜 뺏니까? 결의안을 낸 사람의 의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합의하고 외교부도 처음에……

○**태영호 위원** 제가 의결 직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의결 직전에.

○**김상희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심사할 때 외교부도 이걸 빼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결하기 직전에 ‘나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태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는 못 합니까?

○**김상희 위원** 그렇지만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태영호 위원** 아니, 의결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넣자고요. 그렇지만 의결하자고요, 이거 합의했으니까. 그렇지요? 이 의견은 기록에 남기되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태영호 위원** 저는 이 문구는 빼자 이거예요. 정부에다가 촉구한다고 다 들어가는데……

○**황희 위원** 아니, 정부에다가 촉구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예요.

○**김상희 위원** 아, 진짜 정말……

○**김경협 위원** 그냥 빼고 해 주세요.

○**태영호 위원** 빼고 하지요. 아니, 다 받아들였는데 이거 하나 빼는 걸 가지고……

○**김경협 위원** 하세요, 그냥. 중요하지도 않구만, 태영호 위원님은 그렇게 심기를 잘……

○**황희 위원** 태영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저 기록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 주세요.

○**김상희 위원** 외교부차관님, 대통령께 각별하게 보고해 주세요, 태영호 위원님께서 대통령 부담이 될까 봐 이걸 그냥 엄청나게 주장해서 뺐다고.

○**김경협 위원** 해 주세요, 그냥.

○**태영호 위원** 아니, 대통령 부담되는 게 아니라

결의안에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 하면……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영호 위원님의 간절한 마음 잘 알겠단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해서 빨리 통과시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빼고 하여튼 의결하면 되니까……

○**태영호 위원** 빨리 그거 빼고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이명수** 자, 그렇게……

○**김상희 위원** 아휴, 진짜 정말…… 자존심을 지키세요, 자존심을.

○**황희 위원** 아니, 그런데 신중하세요, 저는 위원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태영호 위원** 아니, 왜 굳이……

○**황희 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다 속기록에 들어가잖아요.

○**태영호 위원** 아니, 글썽 그래서 여기다 정부라고……

○**황희 위원**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를 다 감안하시고 얘기하세요.

○**태영호 위원**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거 당연히 자기 책임을 감안하고 발언하지요.

○**황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소위원장 이명수** 자, 우리가 그동안 합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아휴, 지극하십니다, 지극하셔.

○**태영호 위원** 지극한 게 아니라 결의안에 어디 정상회담에다 이걸……

○**김상희 위원** 왜 안 넣습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지요.

○**황희 위원** 문제 자체를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될 것을 지금 태영호 위원님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김상희 위원** 아휴, 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좀 하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의결을 하니까……

○**태영호 위원** 정부라고 다 들어갔는데……

○**김경협 위원** 12시 넘었어요.

○**태영호 위원** 빨리합시다.

○**소위원장 이명수** 빨리 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의결은 하는데 아까 외교부에서 낸 수정 의견 이거 반영하고 지금 태영호 위원님이 제시한 것 양해해 주시면

함께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의결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할 수 없이 동의하겠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황희 위원** 저도 태영호 위원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태영호 위원님의 지나친 대통령께……

○**태영호 위원** 지나친 대통령이 아니라……

○**김상희 위원** 알겠어요.

○**태영호 위원** 지금까지 양국 간에 광구와 관련 결의안에 정상회담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갔는데……

○**김상희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도 안 했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황희 위원** 그것은 태영호 위원님이 모르시고 하는 얘지요.

○**태영호 위원** 자료 다 찾아볼게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지금 우리가 한다면 아까 말씀한 탈북민 강제 송환 그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것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5번으로 가셔야지요, 순서대로.

○**소위원장 이명수** 제가 여쭙보는 거잖아,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황희 위원** 위원님, 이것은 여야 간의 정쟁의 의제가 아니잖아요. 한일 간의 국익에 대한 이슈인데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을 빼니 넣니 이러시면 도대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쟁입니까?

○**태영호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정부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김상희 위원** 태영호 위원님, 이 자리는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만하세요.

○**태영호 위원**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논의하라고 그렇게 박아 넣는……

○**황희 위원**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논의하지 그러면 어디서 논의해요?

○**태영호 위원** 정부에다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황희 위원** 이런 안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외교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김상희 위원** 이 중대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애

기 안 해요? 60년 된 일입니다. 60년대부터 있었던, 74년도에 서명했으면 60년 된 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24쪽입니다.

결의안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결의안은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의 논의 내용 일체를 공개할 것’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할 것’ 관련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외교부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의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특히 관동 대지진 관련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 관련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서 동 결의안의 취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논의한 내용은 현재 외교교섭 및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안 등이 있으므로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는 부분은 진상규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 그동안 역대 정부 중 해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에 사죄를 요구한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없나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이것은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상조사 부분에 이것도, 그런데 진상조사 이후 저희가 사죄를……

○김상희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살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 학살의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모가 어떻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학살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한번 요구하면서 사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역대 정부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이 부분은 진상조사에 대해서 요청하고, 역대 정부 전부……

○김상희 위원 이것 말고 역대 정부.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역대 정부가 다 이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죄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저희 동북아국 심의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김상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차관이 진상규명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죄 요구도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피해 규모와 정확한 숫자와 그것이 파악이 된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사죄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는 역대 정부 포함해서 진상규명에 우선을 뒤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우선은 두지만 그래도 사죄를 함께 요구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할 때는, 일본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같이 협력해서 하자, 특히 일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일본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지 일본이 학살을 하지 않았는데 요구합니까? 일본이 학살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책임, 사죄를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진상조사만 요구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아니, 역대 정부, 지금까지.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지금까지는 다……

○**김상희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수많은 여러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는……

○**김상희 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 이유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먼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본 정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하거나 그쪽에 문서를 보내거나 한 것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했던 것.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황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명수**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정부 측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독일 사례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이것 진상조사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이 있고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일본에 있어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도 되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학살 관련해 가지고 사죄가 지속적으로 됐었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진상규명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의 순서는 외교부가 한 말씀이 맞아요. 뭘 잘못했다는 게 밝혀져야 사죄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약간 절차상으로는 맞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사죄를 저희가 결의안을 국회 정도에서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

는 것 아니냐, 저는 결의안이 그 취지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김경협 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하고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최근에도 논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김경협 위원** 역대 몇 차례 정도나 논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심의관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최근에 8월 30일 날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의를 받고 밝힌 입장은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 정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에서 대응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계기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방장관이 답변한 답변 요지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김상희 위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경협 위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안 됐던 것인가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문서 공개가 2005년도에 공개가 됐습시다마는 지금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과 기본조약 체결했을 때 당시에는 관동 대지진이 부각되어서 그 당시 정부가 발간한 홍보자료라든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할 것 아니에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논의 과정들을, 논의했던 문서의 합의서를 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 논의 과정들의 내용들은 죽 다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은 해야지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질의 좀……

○소위원장 이명수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 차원에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이것 인정 안 한다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태영호 위원 글썄, 그러니까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지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인정, 불인정 여부를 떠나서 지금 관방장관의 답변은 사실관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인정을 안 한다,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에 중앙방재 전문 조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은 전문가의 집필이다, 이것은 정부의 견해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중앙방재, 그것 일본 연구지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것 내 갖고, 중앙방재회의 보고서 이것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 인정한 거라고 우리가 우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방재 전문 조사회가 우리로 치면 민간 전문가집단한테 맡겼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철저히 전문가집단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견해가 아니라는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지난 6월 13일 날 일본 신문 요미우리에서 ‘관동 대지진 100년 교훈’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왔지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예, 맞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그 특집 기사에 대한 평가에서 이것은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던데?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2009년도 방재 조사회 전문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영호 위원 아니아니, 지난 6월 13일, 이것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게 뭐냐면 일본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가 관동 대지진 100년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1면에 냈다고 해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예, 맞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 기사는 일본 정부가 자기네가 알고 있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공개해서 실은 기사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일단은 요미우리 신문 기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위원님, 단 한 가지 관동 대지진 10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본 언론은, 지금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매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양심 세력이라든지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일본과 교섭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이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국회 결의안의 초점을, 주안점을 사죄에 둘 거냐 아니면 자료 공개에 둘 거냐 이것인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자료 공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죄보다 자료 공개에 두자 이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말씀이세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결의안의 자료 공개는 이때까지 외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해 온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신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사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데 이 문제 사안이 지금은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대 정부 전체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일본 측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사죄를 촉구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정부가 생각하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저희의 인식과 감정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거나 또 그게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저희가 사죄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요? 진상규명 안 하고 있는데 압박 수단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압박 수단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일본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도 있겠지만 이번에 100주년 됐을 때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아주 크게 100주년…… 100주년이 아니라 100년, 관동대지진 100년의 추념식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측에 대해서도 많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 공개를 포함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그게 민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간 자료를 협상 때 정부 쪽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 관례에 진상규명이 있기 전에 정부 차원의 공개 사죄 이것 요구한 전례가 없는가요, 국제 관례에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국제 관례를, 이것 유사한 관례를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은 이런이런 분들에게—위안부처럼—사죄하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부 차원의 분석과 확실한 근거를 문서로써 저희가 가지지 않으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 사죄를 진상규명이 다 완벽하게 끝나야 사죄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는 확인해야 될 게 관동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누군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하나의 진상규명 절차겠지요.

그러면 관동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더라는 것,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죄를 해야지, 범죄가 수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죄 안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진상규명이 다 완벽하게 밝혀진 다음에야 사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미 대량의 학살이 이루어졌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정확히 몇 명인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황희 위원** 정부가 반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정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의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위원님들의 결의니까 저희 입장에 대해서 의견 내면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와 논의한 내용은 현재 외교 교섭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얘기는 계속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본 측의 입장, 관방성 발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협의해도 그쪽이 거의 응하질 않는 걸로 그냥 똑같은 답만 반복한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성의 없이 나온 것 같은데, 일본 측에서는?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관방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들 정부 입장, 뭐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 검토 기록이나 내부 협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것은, 다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 포함해서 현재 외교 교섭 기록을 공개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도 위축되고요. 이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것만 빼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만 빼 달라? 예, 그건 빼 줘요. 그것 빼서 통과시켜요.

○**태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요. 3번 이것 투명하게……

○**김상희 위원** 공개하라, 그것 빼요. 빼고 통과시키시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한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이 된다면 이 결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일단 심의관이 애기했던 것처럼 3항의 내용에는 내용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건 어렵기 때문에 이 건 빼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우리 쪽에 요청하신 것으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관동대지진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하는 결의안 그 자체는 반대는 안 하는데 표현상 아마 그런 부분을……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그런데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일본 정부 측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사죄를 요청하는 문안……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아니면 과거 다른…… 제가 중국 쪽도 담당했었는데요.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라든지 결의안을 하실 때 국회에서 직접 중국 전인대 쪽이나 이쪽에다가 촉구한다고 해서 내용을 넣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희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본에다가 요청하는 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제가 보기에……

○**소위원장 이명수** 중국 전인대에다가?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과거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당시에 우리 국회 결의안을 제가 과장 때 직접 받아봤습니다. 전달도 했고요. 공관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당시에는 국회가 중국 전인대를 향해 가지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을 촉구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관동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일본 정부는 철저

한 진상규명과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위원장 이명수** 그게 낫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낫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정하는 걸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김경협 위원** 직접 요구하는 걸로 하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내용 일체 공개하는 것은 삭제하고?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소위원장 이명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일본이 협조 안 한다고 우리가 우리 측 전문가나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구명한 게 없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정부가 한 것이요?

○**소위원장 이명수** 일본이 협조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문가들 동원해 가지고 조사한 자료나 이런……

○**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김상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해산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 거기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행안부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 관동대지진의 조사나 피해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 내의 전문가, 학자 또 양심 있는 분들이 직접 노력을 해서 밝혀진 사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의견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도 동의하고요?

○**외교부제2차관 오영주** 예.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한 내용 표현 일부 수정한 걸, 조정된 걸 전제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후 2시쯤 속개 가능하겠습니까?

○김홍걸 위원 통일부 것 합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통일부인데 태영호 위원님 아까 말씀은……

○태영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소위원장 이명수 하십시오.

○태영호 위원 오후에 통일부 것 하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18번부터 21번까지에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4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다 비슷비슷한 건데 이걸 하나로, 위원장 대안으로 해 줄 수 있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어떨지?

○김상희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지금 회의하면서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 안 하시고 합의한 것도 다 뒤집어엮으면서……

○태영호 위원 내가 뭘 동의 안 해.

○김상희 위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제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서 낸 것도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아니, 그때는 제가 참가 못 했어요.

○김경협 위원 평소에 잘해야 돼.

○김상희 위원 회의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같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위임해 달라고 왔는데……

○태영호 위원 이것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대안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소위원장 이명수 회의 열면 이것을 우선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심의는 해보시자고요.

○김상희 위원 아니요, 싫어요. 저 그것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국민의힘 위원들의 태도를 제가 봤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위원님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 심의 자체를 반대했거든요.

○김경협 위원 순서를 잘 지켜서 순서대로.

○김상희 위원 예, 순서대로 하세요.

○태영호 위원 오후에 외교부 것 안 한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오후에 계속 연장해서 토의한다면 별문제 없는데.

○김상희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지난번에 원칙대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원칙대로 하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양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부 소관 안건들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06)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0)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2)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4)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2)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7)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2)

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9)

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23200)

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
3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3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
3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6)
3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3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04)
39.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40.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9)
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4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4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4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
4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4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14시05분)

○소위원장 이명수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통일부의 문승현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9항에 있는 8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논의하겠습니다.

8건의 안건 중 합의된 내용들은 마지막에 대한의 형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의사일정 제22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본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고 정의규정 중 ‘북한을 벗어난 후’를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으로 대체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용어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이북민은 북한을 주체적으로 탈출하여 새로운 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한 국민이라는 구체적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한을 벗어난 후’를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후’로 변경하는 것은 중립적 표현인 ‘이주한 후’로 변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이주한 후’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을 위해 해외에 단순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포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대비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다 조문별로 배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김홍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는, 사실 저희도 만나게 된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비슷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문제라든지 범주 자체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북민하고 이북5도민은 공식 법률용어지요, 이북5도민이라는 게?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저도 이북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분들의 수용성이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를 꺼낸 게 3년 됐는데 그 사이에 통일부에서 무슨 검토를 하시거나 의견 수렴을 하신 게 있나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일단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께서 과연 본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서베이(survey)를 한 적이 있었구요. 그 서베이 당시에 제일 높게 나왔던, 선호를 하는 자체는 ‘북향민’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홍걸 위원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자면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지금 한 20여 년이 넘게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 각종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20년 30년 전 쓰던 용어도 지금은 어떤 특정 분야에 속한 분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해서 용어 바꾼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 안정성,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 우선해서 탈북민들이 ‘탈북’, ‘이탈’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한번 정해져서 안정성 있으니까 그냥 두자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통일부차관 문승현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용어 자체가 용어를 지칭하는 대상이 불편하게 느낀다고 그러면 20년 전에 만들어졌더라도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저희가 찾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력인 것 같고요.

다만 현시점에서 이것을 이북민이 됐든지 북향민이 됐든지 하는 걸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 단체를 포함해서 관계부처하고 조금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표현 이것 몇 년째 내가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통일부에다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은 싫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찾아줘야 돼. 아까처럼 북향민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유민이라고 해 달라는 주장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 나가서 유엔을 비롯한 외국과의 문서를 만들어요, 유엔총회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게 대단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영어로 표기하면 디펙터(defector)인데 디펙터라는 표현을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이걸 노스 코리아 이스케이피(North Korea escapee) 이렇게 표현하자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퓨지(refugee)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는 레퓨지가 아니거든요, 한국에 일단 도착하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는 통일부가 이번 계기에, 오늘 이걸 통과 안 되더라도 김홍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빨리 정리해야 돼. 3년째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통일부차관 문승현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 가

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피고 필요하면 용역을 포함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 저도 평소에 북한이탈주민, 저희 지역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탈주민이 살거든요. 그분들도 싫어해요, 이 용어를. ‘이탈’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딱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못 하는데 차제에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도록 전문가분들한테 두루 자문 한번 받아 보시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더 찾아볼까요, 위원님?

○김홍걸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2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홍진 제23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고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는 일반 국민에 비해 세심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등록대장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가능한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통일부 의견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지요?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등록대장에 무슨 양식을 만들어서?

○통일부차관 문승현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나넷이라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적 자료 등이 포함된 게 있는데요. 아마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미니멈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든지 어떤 정보관리 차원에서 효율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제24항, 김홍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의무화하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일부에서는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교육관련 협의회 구성입니다.

관련 부처 간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이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협의회 신설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4조 3항에서 5항, 다른 별도의 협의회를 마련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김홍걸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유동적인 교육환경이라든지

또 보조금법에 따라서 만약에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교부결정도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규정으로 둘 때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하고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아까 별도 협의체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지적처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가 통일부차관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교육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 의무화 부분은 꼭 의무화라고 쓰지는 않아도 좋은데 학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부분, 현행법에는 분명히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근거조항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협의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보면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안에 교육이 약간 들어가 있는 정도일 뿐이고 또 기본계획은 3년에 한 번 세우고 시행계획은 1년에 한 번 세우는데 이게 1년에 딱 한 번 연초에 개최되는 수준이라 협의회는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정도 시스템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교육현안이 다뤄질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된 것은 몇 년째 이런 교육환경이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기 때문인데 통일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담긴 교육 부분에서 보면 3국 출생 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진학기회 제공, 멘토링 제공 이렇게 내용은 적혀 있지만 이게 전혀, 매년 똑같은 내용 그냥 반복해서 적어 놓는 수준이고 그동안에 보면 여명학교 같은 데는 부지도 못 찾아서 한동안 해맸고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교육비도 아직 많이 빈약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체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탈북 청소년 교육환경에

대한 협의나 시스템이 잘 이루어졌다고 장담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게 장담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명학교하고 성남에 있는 하늘꿈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 느꼈던 게 아까 여명학교 같은 경우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강서구의 폐교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학교 선생님들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요청드린 적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탈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환경이라든지 개선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포함해 가지고, 후년 예산부터 증액을 포함하고 그리고 정착지원협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통일부 차관이 주재를 하는 회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세션을 뒤서 아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개선안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으시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 봤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해는 사실 예산안에 반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2025년 예산부터 제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대안학교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위원님도 좀 잘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내용을 좀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실제 지원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실제 지원하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1년?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입니다. 지금 대안학교 경우는 한 48억 원 정도……

○소위원장 이명수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원하는 데가?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곳은 여명학교 등 다섯 군데가 공식 인가가 돼 있는 곳이고 또 방과후 공부방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하나재단

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계성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정착지원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틈새를 메우는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글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해 줘야 한다 아니면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항상 애매한 것 아니에요, 하거나 안 하거나? 안 해 주는 근거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못 해 줘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조금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고.

일단 여기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다음에 제25항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제25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해서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주거·취업·교육 및 사회보장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 주어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호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행정절차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관련해서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문대비표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4항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되 왼쪽 현행에 보시면 3항에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수정의견으로 해서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전문위원이 제시해 주신 그 내용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통일부 의견은 봤습니다.

그러면 제25항은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제6조제2항입니다. 현행의 25명을 40명으로 위원을 확대하고, 비고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과 관련하여 개정안 4항과 같이 법률안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를 모아서 수정의견으로 해서 2항 후단 부분에다가 공무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행일은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고 준비행위, 부칙 2조는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칙규정이 필요 없다는, 그렇게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통일부차관 문승현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에 다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수용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제27항, 김홍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20조 6항 1호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6항 2호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요건을 명확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3호에서 성폭력 등 법률에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변 안전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으로는 ‘성폭력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주거이전의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도 거주이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또 스토킹 피해도 명확하게 법률 조문을 규정해서 거기에서 명확하게 주거이전 사유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현행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통일부 입장은 기존의 성폭력방지법상에 동일한 취지의 주거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도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중복규정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여기 원래 계셨던 분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약간 역차별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에 오히려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현행법상의 성폭력방지법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성폭력피해자인 이 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런데 제가 좀 여쭙볼게요.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중에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이 많아서, 일반 여성 성폭력 피해와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의 성폭력 피해가 특별히 차별화되는가요? 특별하게 여기가 사회문제가 되거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주민들 성폭력 피해자하고 숫자상으로 다른 차별화가 되어 있냐 그 말씀이에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특별히 그렇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많은 편입니까?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을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게 어떤 신고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지요. 성폭력……

○소위원장 이명수 아무튼 참고사항이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현실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입장이 아무래도 약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게 현실인데 그것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취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안 좋다, 이것은 저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쪽에 정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니 그 법도 폐기하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처음에 탈북 후에 여기서 정착을 하신 초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거주지를 결정도 못하고 또 신변보호관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말로 하면 보호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감시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도 자기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북쪽과 남쪽은 다르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 성폭력 피해자하고 동일하게 고려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탈북민 특수성에 맞게 보호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도 보면 신변보호관 또는 정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군인한테 당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해자 거주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탈주민이 어쨌든 이질적인 사회에 와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 우리 통일부에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법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은정** 지금 초기 정착 시에 마음대로 주거지를 결정……

○**소위원장 이명수** 말씀하실 때 속기록 때문에 소속이나 함자를 말씀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은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의 김은정 사무관입니다.

초기 정착 시에 마음대로 주거지를 결정 못 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 또 신변보호관 감시하에 여러 가지 탈북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들을 사실 치료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 안에서 또 이러한 문제들을 닦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측면 이런 것들도 물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폭력 피해자와 약간 동일 선상에서 이걸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일단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착지원법 자체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국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차별

화돼서 조금 더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폭력방지법상 주거지원 이 규정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안에 과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나오는, 특별히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히는 부분들을 찾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리서치(research)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 북한이탈주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진 어떤 특별한 지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그 문구 좀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좀 질의를……

○**소위원장 이명수** 예.

○**태영호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뭔가 하면, 그거잖아요. 한국에 있던 여성분들과 북한에서 온 여성분들의 성폭력을 주거이전 문제에서 같이 다룰 거냐 아니면 특별히 다뤄줄 거냐, 이 법으로 따로 특별히 규정하는 게 필요할까 이 이야기 같은데, 저는 김홍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게 뭔가 하면 최근에 터진 성폭력 피해 사건 이것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탈북여성들이 본인의 보호자인 줄 알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중국 전 과정을 그 성폭력자가 데리고 한국까지 와서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당하면서도 그게 본인 자체가 성폭력인 줄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TV나 언론을 보고 아, 이게 성폭력이었구나라고 후에 알게 돼서 결국은 제보한 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여성들이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것도 다 봤어요. ‘왜 그런 성폭력을 수년째 당하면서도 이제야 이 사실을 털어놓느냐’ 하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그 목사밖에 없는데 누가 내가 여기 사람도 없는데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니까 지금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성폭행했는데 이걸 과연 제보해도 될까, 이런 한국인들과 다른…… 한국인들은 여기에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연고도 없는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무서움에 몇 년씩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번에 노출시켜서 이게 터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응당 이거 김홍걸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거 이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河泰慶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이명수 하태정 위원님.

○河泰慶 위원 그런데 저도 탈북자 지원 이 일을 오랫동안 해 가지고……

대부분의 성폭력은 외국에서 벌어져요. 외국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실상 불모로 있기 때문에 브로커라든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신고하면 끝이라서 독립적이지 않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목사, 벌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원에서 잘못된 거지. 하나원에서 국내 정착 교육을 할 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북한은 훨씬 우리보다 근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종속적이고.

그래서 그게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걸 범죄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서 빨리 한국인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걸 거꾸로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의 사건을 보면 하나원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당했던 것도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한 내용은 밖으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를 해서 국내에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짜고 집 옮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나중에 정부 정책이 부실해 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탈북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과 그리고 신고 이것을 국내 정착 과정 이전에 강화하는 식으로 대안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보도 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21년도에 여가부에서 성폭력 피해 탈북민 여성 상대로 실태조사했는데 공개는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일부 나온 거 보니까 85% 이상이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해 본 분 얘기는 10명 중에 서너 명은 성범죄 피해를 겪은 걸로 얘기를 하더라 했는데 하나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체에서 2시간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니깐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형평성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일부의 의지가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낸 법의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수정해서 현실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법안 개정에 따른 부작용 요소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주신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새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원에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글썄요, 저도 어쨌든 탈북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의외로 그런 건이 실제 노출된 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여기 원안 때문에 제 의견 말씀 드리는 게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일부 글자라든가 이런 거 조금 바꾸는 건 바꾸더라도 보호해 줘야 돼요.

○河泰慶 위원 그래서 성폭력 신고하고 하나원에서 철저한 예방교육 의무화 이걸로 제도적 보완책을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한 번 더 조문 정리

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요, 어차피 다음에 또 보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통일부에서 의견을 무슨, 이 보호규정 두는 게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 뭐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 규정을 두는 게 탈북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하다 이걸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준다 이런 검토의견?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소위원장 이명수 말이 안 되고, 피해자를 노출한다 그것 때문에 못 한다……

○河泰慶 위원 실태를 잘 모르니까, 그냥 기본 동정심도 없이 이렇게 쓰는……

○소위원장 이명수 아까 말씀하고 차관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해서……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우리가 약자에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지금 정부 법이 이상하게 약자한테 인색해요.

이것은 다음에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음, 28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28항입니다.

이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철구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주체이므로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은 보호대상자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범위가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통일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통일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이게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재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한 4개 정도는 꼭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문화가족법이라든지 국군포로 송환법 등 유사한 입법 사례를 볼 때 이렇게 혜택이 되는 이런 항목들을 죽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하여튼 예산 범주 내에서 또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라든지 그 범위 이런 데 대해서는 별도 통일부령으로 일단 규정을 하는 방안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원 대상을 법률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하고 통일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그건데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는데 여기 통일부 의견을 낸 것 보면 ‘여기에 나열하면 여기 나열한 것만 해 준다. 다는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검토의견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왜 나열된 것만 해 줘서 오히려 범위가 좁아진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차관 문승현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시고요. 별도 항목에 나머지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는 그것은 잘못된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이 불쌍하게 살 정도예요. 제가 집에도 가보고 만나 보기도 하는데 아프고

이럴 때 우리나라에 자기들한테 어떤 예산이나 이런 의료 지원이 있는지 그것조차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하게 우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방법론에서 이렇게 법률에 열거하고 명시할 거냐,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할 거냐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비 지원이 현재 한 10억 정도 일단 하나재단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결국 예산 문제 같습니다. 이게 2배, 3배가 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조금 더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글썄요, 기재부야 당연히 예산 걱정하는 거고,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법률로 이렇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영이나 필로 할 거냐. 더 검토하시겠습니까? 다음번에……

○**河泰慶 위원** 예, 법리 원칙상 하나를 구체적으로 넣으면 계속 넣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명수**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영으로 넘어가면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못 믿어서 사실은 내가 일부러 올려놓은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위원장님,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넣는 걸로 그렇게……

개정안 3항 부분이요.

○**소위원장 이명수** 개정안 3항이요?

○**전문위원 정홍진** 예, 지방자치단체장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것은 협의 대상에 포함하면 좋잖아요. 이의가 없잖아요. 그건 이의가 없고.

○**전문위원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계속 심사하는 것.

제29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29항입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및 적응교육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불신하게 하고 남북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내용에 차별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차별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내용을 교육과정 전반으로 하고 내용을 조금 순화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제시해 주신 의견처럼 이걸 조금 약간 축약한 형태로 해서 표현을 다 가다듬는 선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동의인데 수정의견은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조금……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뭐 이런 차별적인 교육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이게 등장하는지 맥락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교재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중에 무슨 차별적인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원에서 사용되는 언어 교재를 하나원 원

장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북한 사투리를 비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사투리로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이런 표현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 보통 법이라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굳이 이것을 고칠 현실적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상희 위원 우리가 이거 국감 때 준비한 건데요. 교육 내용을 보니까 은근히 북한 출신의 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하하는 그런……

○河泰慶 위원 은근히 있어요?

○김상희 위원 은근히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河泰慶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실제로 있었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김상희 위원 실제로 있었다니까.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면 그걸 보고…… 왜냐하면 그건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공감이 되면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실과 다르면 하나원에, 무슨 문제가 없는 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인식이 심어질 수 있어서……

○김상희 위원 아니, 뭐 실질적으로 그게 있었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원칙적으로……

○김경협 위원 해 봤다고 문제될 것 있어요? 원칙적으로 해 놓으면 좋잖아요.

○河泰慶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건데 개별법에 있다면 이 기관에서 실제 그런 프랙티스(practice), 그런 관행이 있었다 이게 있어야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이걸 뭐 굳이…… 원래 있었다면 몰라요. 원래 있었다면 뭘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건 새로운 상황이 존재해야지요.

○김상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한 거지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공유해 주시라는 거지요.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황희 위원 하 위원님은 확인되면……

○河泰慶 위원 확인되면 제가 동의를 할게요.

○김상희 위원 봐 보세요. ‘하나원 탈북민 교육 대상 교재를 살펴보니 북한 주민 수두룩’ 해 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거 읽어 보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비하하는 내용이……

○河泰慶 위원 좀 줘 보세요, 지금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김경협 위원 비하 수두룩하대,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김상희 위원 아니, 동료 위원이 국감에서 지적해 가지고서 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河泰慶 위원 아니, 워낙 인식이 달라서……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실제로 다르잖아요.

○김상희 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쨌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서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그냥 원칙적인 내용이고 또 한 번 점검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교육 교재를 만들거나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하라 이런 거니까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야야’ 빼고 그냥 ‘한다’ 이렇게 해도 그거야 큰 차이는 없는데……

○김상희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차별이 없도록 해라, 이런 정도면……

○통일부차관 문승현 전문위원 주신 의견에 따르자면 ‘적용 교육과정에 보호 대상자의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야야 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표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러세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야야’를 넣는 걸로?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것은 약간……

○김상희 위원 수정의견으로 수용한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근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것은 현실을, 실태를 이야기한 거네,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읽어 줄게요. 42쪽에는 ‘북한 출신 사람들은 비교적 큰 성량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 전화통화를 할 때도 마치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큰소리로 말한다는 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말해 보세요.

○태영호 위원 문화적 성향이 그런데……

○河泰慶 위원 그래요. 아니, 태 위원님이 말해 봐요, 나보다. 태 위원님이 읽어 보고 이게 현실과 다르면……

○김상희 위원 그런 것도 차별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얼마든지.

○河泰慶 위원 한국 사람이 느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만난 북한 주민들 대체로 저런데……

○김상희 위원 아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차별로 느낄 수 있지요.

○태영호 위원 통일원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전화받을 때 옆에 사람 있는데 큰소리로 한다거나……

○河泰慶 위원 그렇지. 주변 사람들에 예의가 아니다……

○김상희 위원 북한에서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차별이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하니까……

○태영호 위원 그런데 만약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이게 안 되는가?

○河泰慶 위원 아니, 나는 이 법 반대야. 이것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더 잘 적응하라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써 온 여러 가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쪽의 문명 단계랑 우리 쪽 문명 단계가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른데, 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고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하다는 현실을 적어 준 것을 이걸 비하, 차별이라고……

저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차별의 문제, 차별로 보는 거고……

○河泰慶 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걸 부정하면 안 되지요. 이걸 뭐 차이가 있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덧씌우는 거지.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교육을 통해서 비하하고 차별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河泰慶 위원 차별하는 게 없고요. 적응 잘하라고 교육을 하는 건데요. 뭐 저런 것까지 시비를 거시고……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뭐 이거 할 것 없어요. 시비 걸 게 따로 있지.

○소위원장 이명수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인 뒤에……

○河泰慶 위원 계속 심사합니다.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김상희 위원 이게 뭐 잘하라는 얘기인데……

○河泰慶 위원 잘하고 있는 것을 뭐 나무라고 그래.

○김상희 위원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은 합의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머지 항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31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우선 30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30항 하태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면제 및 채무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금사용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8조의2 1항과 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항이 두 개가 하나로 묶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과 3항을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부에 있는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의 내용이 1항 같은 경우에는 상환계획 조정,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내용이 되겠고, 3항이 채권 상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운용관리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채무면제에 관한 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근거·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면제요건이 국가채권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채권 관리법의 면제요건보다는 완화된 내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개정안의 입법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중복지원 및 기존 상환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항은 공공기관이 채무자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공공기관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주가 되고 공공기관은 부채를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에서의 출자전환에 관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출자전환을 인정하는 경우 일반기업과 형평성 등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 등에 따른 수차례의 정부 지원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점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우선 두 번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그 의견이 저희 통일부 입장이고요.

아까 첫 번째 관련해서 하여튼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우선 기존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대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50% 이상 다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신중하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희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현대 손해 본 걸 다 떠안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정도 정부가 한 거고 관광공사가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내가 이 사업이 괜찮으니깐 현대 거를 인수하겠다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관광공사보고 떠안으라고 그리고 정부가 시켜놓고 지금은 정부가 책임 안 지고.

이것은 사실 기재부도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기금과 달리 북한 상대로 하는 거라 리스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던 건데 다른 기금하고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격상 이것?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자 같은 것은 사실 관광공사 같은 곳은 이익 보기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맞추려고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고려를 해 줘야 나중에 대북사업이 됐든 정부가 사업자들이 나서게 만들어야 할 일이 다시 생겼을 때 그때 좀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전문위원께 질의하했는데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게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정홍진 제가 수정을 한 부분으로, 그 부분은 조사관이 원래 작성했던 것을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삭제했습니다.

○김홍걸 위원 이미 삭제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통일부차관 문승현 괜찮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몇 분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뒷부분,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이렇게 발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는 문제 같고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추가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희 위원** 통일부는 이의 제기가 없는데 지금 기재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기재부에서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예산 때문에 그렇게……

○**河泰慶 위원** 기재부는 어차피 반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의됐다고, 그러니까 방금 차관께서 이야기한 주식 상환이나 이것은 빼고 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일부 채무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그 기준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게……

심의위원회 있다면서요, 그것을 심사하는.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가 공공기관이에요? 뭐로 돼 있어요?

○**황희 위원** 공공기관이요, 문체부 산하기관.

○**河泰慶 위원** 공공기관도 그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관광공사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솔직히 우리 보수 정부도 참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포폴리즘으로 안 했거든요. 그때 막 서로 총알 날아오고 이러면 반복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있었던 건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교류를 지속했는데, 금강산 지금 생각하면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사망자가 있더라도 관광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단했던 것도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멀리 봤을 때는 잘못했던 것 같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책임은 정부가 나눠 가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누가 하겠어요? 대북협력 사업을 공공기관이든지 누가 같이 부담을, 리스

크(risk)를 안으려고 그러겠어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친 이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차관님 말씀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여기서 나와서 기재부 의견 듣겠다고 하고 협의를 더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기재부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서 결정해서 가요.

○**소위원장 이명수** 미리 좀 듣고 여기 나와서, 법안 심의가 있으니까 뭘 챙겨야 되느냐 미리 듣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여기서 의결하려고 그러면 들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건 조금 더 다음에 심의하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河泰慶 위원** 우리 입장은 그렇게 공감하는 거로 정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황희 위원**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기재부 의견은 뻔하거든요. 어차피 또 법사위로 갈 거 아닙니까?

○**河泰慶 위원** 그래서 법안은 일단 통과시키는 거로 하고……

○**태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 기재부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황희 위원** 예, 그것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河泰慶 위원** 법사위에 올라가잖아요, 법사위.

○**황희 위원** 옛날에 국토위에서도 지하철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 지원 안 하는 것 그것을 처음으로 통과시켰어요. 법사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일이에요.

○**河泰慶 위원** 거기서 다투면 되거든요. 우리 외통에서는 통과시켜 주고 법사위에서 다투라고 하는 거예요.

○**황희 위원** 특히 예산 관련되어서 기재부하고 부딪치는 부분은 법사위에 넘겨주는 게 나아요, 오히려. 상임위에서는 의결을 줘……

사실 반대의견 없지요.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일 큰 것은 오히려 지하철 무임승차 건이네요. 그것도 다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로 가서 최종적으로 정부안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네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우선 기재부 의견은 별개로 하고 통일부가 수용하겠느냐 그걸 여쭙니다.

○통일부차관 문승현 저희가 아까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 약간 조금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거의 매일 우리 기업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상태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기업들이 50% 상환한 기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산상의 제약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요구를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개별 기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관광공사에게 이런 일종의 보상이라고 그러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사실은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 왜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 이런 요구들이 이렇게……

○황희 위원 그러면 차관님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좀 내부에서 검토, 왜냐하면 이것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잠깐만요. 이 법개정안은 관광공사를 특정해서 해 주자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황희 위원 그렇지요.

○河泰慶 위원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 항을……

○황희 위원 법적 근거.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근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제8조의2에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반대하니까 빼고 1항만 통과시키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관광공사 등등 이런 건은 법사위의 문턱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준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차관 문승현 괜찮으시면 우리 법률관 의견 한 번만 듣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은정 김은정이고요.

국가채권 관리법……

○소위원장 이명수 죄송하지만 항상 소속이나 합자를 설명하셔야,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속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기록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요.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은정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은정 사무관인데요.

이 앞부분 1항과 관련해서 사실 기금운용관리 규정 안에 있는 부분들을 법률로 상향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국가채권 면제에 대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적인 규정들을 고시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이 법의 최종 담당 부처인 기재부하고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河泰慶 위원 논의해 왔다가니까.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은정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 한 번 오늘 중에 라도……

○황희 위원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기재부 반대해요.

○河泰慶 위원 뻔해, 안 봐도. 이미 논의했고.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박상돈 위원장님,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이것 담당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동안 경험보험과 대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경험 내 기업들에 대해서 9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채권 면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존에 2500억 정도를 다른 기업들은 꾸준히 갚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기업들은 이미 돈을 갚았는데 그러지 않고 버틴 기업들은 이제 이 규정이 입법으로 마련되게 되면 채무 면제를 하게 되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에 올리는 것들은 기업들의 그런 기대를 정부가 충족시켜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은 정부 내에서 부처 간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기재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지 관련된 부처들이 기업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국가채무법에 어떤 특별 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지금 현실을 왜곡하는 건데 관광공사는 내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르고, 자기 책임이 인정되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면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하듯이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광공사도 배째라 이러지 않는다고,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지. 지금 다 갚으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좀 면제를 해 주면 나머지는 갚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빚을 갚기 시작하지 이것을 안 하면 끝까지 버티지.

어쨌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큰 틀에 있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명수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동안 성실하게 부채를 갚아왔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2500억. 그거하고 별개로 억울하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진짜 강요로, 그것도 사기업을 어떻게 보면 갚아준 거잖아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 법은 그것의 범주를 더 넓혀준 것 같아요. 그 근거가 그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서 억울한 사람들을 더 구제하기 위한 범주를 넓힌 거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납부 안 해도 된다 이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는 거지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확정해 주는 법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그

걸 섞어서 좁혀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명수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정홍진 지금 말씀하신 게, 1항하고 3항은 채무 면제 이런 내용이고요. 2항이 공공기관을 위해서 형식을 달리해서 출자전환이라는 형식으로, 채무 면제라는 형식이 아니라 출자전환이라는 형식으로 부채를 줄이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2항은 빼도 된단िया요.

○전문위원 정홍진 공공기관만 하게 하시게 되면 2항으로 하시는 게……

○河泰慶 위원 2항으로 하는 게 낫다고요?

○전문위원 정홍진 예. 그게 아무래도 채무 면제라는 형식을 띠게 되면 일반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른 형식을 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예를 들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되 기존 상환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면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단서를 두면 안 되나요, 8조의2 1항의 경우에?

○황희 위원 본인이 정말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의지를 가지고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이미 갚은 기업이 피해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민간기업은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진짜 돈 버는 데도 있고. 그러면 자기네가 당연히 갚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 끌려간 데잖아요, 관광공사는.

○소위원장 이명수 공기업.

○河泰慶 위원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감안해서 해 주자는 건데 그게 비합리적인 게 뭐가 있어요?

○황희 위원 그것도 막 해 주자는 게 아니라 근거 법안……

○河泰慶 위원 법적 근거 만들어 놓고 심사해서, 구체적인 것은 심사 단계가 또 있어요. 법에 관광공사라는 단어 한마디도 없어요.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차관님, 정부 의견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괜찮으시면 저희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모아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31항, 정부 측이 제기한 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정부 측이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목적 달성 시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규정과 별도로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기부금을 신설하여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저희가 중간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4조 1항 1호·2호의 재원으로 접수’하면 말이 기부금의 재원으로 접수한다는, 의미가 이상해서 그 부분은 약간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통일부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이것은 정부 법안으로 낸 건데요. 이 기금이 기존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돈을 어디어디에 써 달라 이렇게 됐을 때 예산 단년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예산 연도가 마치게 될 경우에는 그 돈이 다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북 고향이신 분들, 이산가족분들이 이 기금에다가 10억이든지 5억이든지 돈을 기부하시고 이 돈이 나중에 통일된다든지 이런 상황 때 내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 달라 이런 목적으로 계속 기금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기 때문에 여러 이산가족들을 포함해서 의미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문구 수정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태영호 위원 차관님,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이 돈을 어디에 써 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기부금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태영호 위원 지금?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 법이 없으면 다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통일부차관 문승현 이미 다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태영호 위원 28억이?

○통일부차관 문승현 28억이 예산 연도가 마치는 순간에 다 국고로 귀속이 됐는데요.

○태영호 위원 다 들어갔네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앞으로는 이렇게 기부금 요체, 협력기금에다가 별도 계정을 설치해 가지고 본인들이 5억이든 1000만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태영호 위원 실제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 포함을 해 가지고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왜 이제야……

○통일부차관 문승현 안 그래도 저희가 차관회의라든지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시다. 왜 이 좋은 법이 이제야 만들어졌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조금 늦었기는 하지만……

○황희 위원 좋은 차관님이 오시니까……

○태영호 위원 실제 기부금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 소원대로 가지고 있다가 통일되면 그분들 고향에다가 학교를 짓든지……

○통일부차관 문승현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지금 합의해 주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인데 이것은 30항 하태경 의원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함께 자구 정리한 뒤에……

○태영호 위원 아니, 이것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먼저 빨리 통과시키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아니, 30항하고 31항하고 같은 법이니까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영호 위원 정부에서 이제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황희 위원 그러면 31항도 통과 안 되는 거지.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명수 아까 차관님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정리한 내용 보고 그때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4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진 32항부터 35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해철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에 초중고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안은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등도 통일교육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전해철 의원님 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를 포함하는 것이고, 정청래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에 초중고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약 40만 명의 교원을 통일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 통일교육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교원의 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정 의원님 안은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는 내용인데 재외공관원도 당연히 포함은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원격교육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교육 실시 점검 및 점검 결과 평가 반영입니다.

설훈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전해철 의원님 안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은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통일교육 실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에서 통일교육 실시 결과 점검 규정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각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급 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의견은 교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 교육부는 교원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포함하는 결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안은 전해철 의원님 안과 달리 통일교육 요청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님 안이 반영이 되면 정청래 의원님 안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자에 재외공관원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실무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이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대상은 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외공관원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점검 및 점검 결과 평가 반영입니다.

6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묶어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대안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해철·설훈 의원님께서 5항으로 만드신 부분은 저희가 평가 결과를 이렇게 한계도 있는 부분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 3항 후단 부분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라든지 점검·평가, 학교별 실태조사에 대해서 다 수용이 가능한 입장인데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부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교원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해철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사들이 겪고 있는 부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재외공관원 명시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공무원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외교부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시 점검 결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를 평가 단위로 한 전해철 의원님 안보다는 넓은 범주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 단위로 한 설훈 의원님 안이 조금 더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교원 통일교육 명시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안을 주로 전문위원이 제시했는데, 대안.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가 대상 같은 부분에 전해철 의원님께서는 각급 학교로 평가 대상을 좀 더 작은 단위로 하고 있는 반면에 설훈 의원님 안은 시·도교육청으로 평가 대상 범주를 넓혔다는 측

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설훈 의원님 안이 조금 낫겠다 이런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교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통일교육이 재미없으니까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 그것을 통일체험교육 같은 걸 해서…… 저도 그전에 갔다 왔는데 현장 있잖아요, 국경 현장 여러 가지, 땅굴도 보고 연평도, 그것은 일종의 관광시켜 주는 거거든. 부담이 안 되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교직원들이 100번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 그것 하면 통일체험교육에서 몇 박 며칠 교육을 잡더라도 자니까 시설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예산이지. 그 예산은 충분히 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직원은 아예 통일교육이 아니라 통일교육체험 이렇게 해 버리면 아마 서로 가려고 그럴 거다. 시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왜 이게 필요하냐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한 거기는 한데 저도 취지에는 동의하는 게 갈수록 통일 이것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해. 많아져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맞습니다.

○河泰慶 위원 친북·반북, 나는 이것은 좋아. 그런데 북한에 무관심해,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차라리 친북이든 반북이든 북한 가지고 싸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교육은 강화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으로 다 체험교육으로 바뀌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구하도록 하고요. 교육이……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그냥 ‘통일교육’ 하지 말고 ‘통일체험교육’으로 하라니까.

○황희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사들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일만 있으면 전부 다 선생님들 교육으로 의무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통일부차관 문승현 아마 일부 교사들한테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도……

○河泰慶 위원 나도 강의실 교육은 반대야.

○**통일부차관 문승현** 다녀오고 나면 다녀온 부분 동안에 또 해야 될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평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교사들이 저야 되는 추가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일단 하여튼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아울러 교육이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 등등 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원들의 추가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교육은 실시하게 하되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교육 실시 및 점검·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교육 실시 방법 또 점검이나 평가 방법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뒤서 지금 말씀한 것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문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리고 그 문제가 있겠다. 안보 교육, 백령도 가고 연평도 가고 땅굴 보러 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가면 다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백령도 언제 가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설들이 국정원 관리로 되어 있지요. 그것 통일부로 가져와야 대중적으로 시키지, 국정원에서 교육하니까 이걸 대중적으로 시키기도 그렇고, 거기는 비밀 사업 하는 데인데. 그것은 법으로 고칠 수 있으면 법으로 고칩시다. 그것 좀 찾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지금 논의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자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논의하는 다음 항하고 같이 통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6항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진** 조정식 의원님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교육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교육 시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여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타당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의2 1항의 내용이 차등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 2항의 내용은 평가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동 법 12조 1항에 이미 근거가, 73쪽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이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전문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하는 항은 다른 조항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방의 통일교육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건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河泰慶 위원** 평가의 항목이 투입하는 예산액수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른 객관적 지표가 있어요, 평가의 항목에?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것은 담당 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하무진** 국립통일교육원의 하무진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매년 시도자치단체로부터 각 지자체의 통일교육계획을 보고받고 있고요. 매년 연말에는 통일교육사업과 직원 대상 실시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통일교육도 보수·진보가 완전히 반대

인데 친북적인 교육을 진보 쪽에서는 많이 하고 보수는 북한 인권 교육 많이 하고 그러면 평가 점수를 어떻게 줘요?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하무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보수정부 들어서면 북한 인권 교육하면 점수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친북 교육하면 점수 작게 주고, 이것 정쟁사안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평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진보정부 들어서면 북한 인권 교육하는 자치단체는 점수 작게 주고……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면 이런 정쟁 유발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하무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신 건데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따라서 통일공감대라는 지표를 저희가 행안부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정량적인 지표, 시책 수립과 이행 실적, 행사 개최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 주로 정량적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지방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평가하고 통일부에서 재정적 지원한다……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있는가요?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하무진 현재 통일부 예산에 통일교육으로 지자체에 현금 교부나 보조는 하지 않고요. 현재 통일부가 지자체나 지역의 통일교육 관련 지원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나 통일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현금 지원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앞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하무진 저희가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통일교육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재정적 지원 문제

가 들어갔는데 이것 가지고 기재부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는가요?

○국립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하무진 이 안에 대해서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됐고요.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 만드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河泰慶 위원 나는 이것 반대인 게 예를 들어 광주에서 정율성 교육을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량적인 지표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현실이 충돌하고.

그래서 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니까 교육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가가, 정부가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의무화해서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태영호 위원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칭하듯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중앙과 지방의 정부 역할 차이, 성향 차이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단순히 양적인 것만 해도 문제고 정성적인 게 들어가면 더 문제고.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관련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가 공감대 확산이라는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통일교육 관련한 지자체 시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하는 방법을……

○河泰慶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느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진보·보수가 자꾸 바뀌고 대북정책이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지자체는 헛갈려, 진보정부 들어서면 뭐 하면 돈 많이 주고 보수정부 들어서면 딱 끊어 버리고. 이게 특히 지지자들이 예민한 문제인데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지. 지자체야 어찌겠어, 자기가 진보 쪽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현실을.

○소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원칙적으로 방향성은 공감을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심사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 제37항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평화통일’로 개정하여 통일은 평화로운 방식과 평화로운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안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혀 통일교육에 있어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평화통일의 원칙은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 조제3항과 현행법 제3조제1항 등 거듭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상희 의원님실하고 상의 중에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김상희 의원님의 취지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 2조(정의) 조항에 “통일교육”이란 평화통일의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우선 정의 개념에 평화통일 문안을 하나 반영하고요. 그다음 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의 첫 번째 항목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평화적 통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김상희 의원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헌법에 있는 평화적 통일하고 여기 평화통일하고 어떻게 달라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같은 말인데요. 김상희 위원님이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왜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있는냐?’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는 헌법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우리가 통일이라고 했을 때 다루어야 될 가치가 평화도 있겠지만 자유, 인권, 민족공동체, 민족자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평화통일로만 하는 것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약간 도외시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려서 정의 조항에 ‘통일교육이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평화적 통일’이다 이렇게 정의와 원칙 규정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음을 부가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제명은 그대로 둥니까?

○김상희 위원 제명은 그대로 두고 2·3조를 이렇게 보완하는 그걸 지금 통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수용했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河泰慶 위원 그러면 법 이름은 그냥 통일교육 지원법……

○김상희 위원 그대로.

○河泰慶 위원 그래요.

○김상희 위원 2조, 3조……

○소위원장 이명수 없으면……

○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이거예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아니, 개정안을 다 받아들이는 말씀은 아니고요. 개정안의 취지를 아까 정의 조항하고 원칙 조항 그 두 군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의원실하고 상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냥 수정안으로 해도 특별하게 큰 이상은 없지 않나, 그렇지요? 수정안으로 하세요, 2·3조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정홍진 예,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상희 위원 제명을 바꾸지 않고 2·3조에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취지를 수정안으로 내 주시는 것으로……

○전문위원 정홍진 예, 그렇게 의결하시면 저희가……

○河泰慶 위원 잠깐만, 지금 말이 빨라 가지고 이게 다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정의 1에 ‘통일교육이란’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안에 평화를 집어 넣겠다는 거지요? 일단 하나가 정의에 ‘통일교육이란’ 해서……

○김상희 위원 예, 정의·원칙이 있는데……

○河泰慶 위원 그렇지. 여기 평화를 넣고.

○김상희 위원 원칙.

○河泰慶 위원 그다음에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평화를 또 넣고, 이 말이지요?

○김상희 위원 예.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래요.

○김상희 위원 제명은 그대로 두고.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다른 법에 나오는 통일 용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평화통일로 안 고칩니까, 다른 법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제명을 안 바꾸니까.

○소위원장 이명수 그냥 그대로 둔다?

○통일부차관 문승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예를 들면 10조의2에 ‘(통일교육위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평화통일교육위원)’으로 다 바뀌야 되겠네?

○河泰慶 위원 그것은 안 바꾼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건 안 바꾸고?

그러니까 바뀌야 될 것, 안 바뀌야 것을 좀 구분해 줘요.

○전문위원 정홍진 제가 통일부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정의) 규정에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그 부분하고 제3조제1항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만 바꾸는 겁니다.

○태영호 위원 그것만 개정한다?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사일정 제33항, 의사일정

제34항, 의사일정 제35항, 의사일정 제37항, 이상 5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해 이들 5건을 조정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결 안 한 것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38항 우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 업무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안에 새로 추가되는 제1호, 제3호의 위탁 업무는 기존 규정과 내용 면에서 상충되지 않으므로 법체계 정비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률에 위탁 근거를 두고 구체적 업무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현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저희 통일부 입장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이 환경 변화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법률에는 위탁 근거만을 두고 관련된 업무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아까 전문위원 의견이 저희 의견이고요.

특히 위탁 대상으로 추가한 상봉 행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남북관계 관행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 한적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적의 사무로 되어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교류 활동 지원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될 정책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태영호 위원 약간 통일부의 입장이 애매하네요.

○河泰慶 위원 어쨌든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 수정하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의사일정 제39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존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생존자의 65%가 여전히 미촬영 상태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상편지의 제작이 저희가 예산상으로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약간의 자구 수정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여러 가지 남북관계 교착 상황 때문에 이산가족 교류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이런 현상을 감안해서 영상편지 제작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영상편지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들의 생애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도서 이런 여러 가지 등도 포함한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한 상태에서 김상희 위원님 등이 제기하신 이산가족 법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의원님들 의견.

없으면 수용하는 걸로 의결해도 될까요?

○河泰慶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당사자 의견에 따라서 영상편지를 원하면 해주고, 책을 쓰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홍진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제8조의3 제명을 (영상편지 등 제작·수집)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9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이고,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 및 개발 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장비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자의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무장지대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 제정안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 허가 등 현실적 제약 요건이 있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DMZ 보전 및 이용

은 정부 내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부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유엔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정 위원께서는 비무장지대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유의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도 수립할 수 없고 미래 계획도 수립할 수 없었으므로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이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태용 위원님께서 이 법의 필요성이나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나 군사정전위가 30년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 간 협의 및 검토가 우선된 후 소위에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처 간 협의 후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유엔사와 협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부처가 다 관련되어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유엔사와도 접촉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제2차 법안소위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께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환경 및 문화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 비무장지대 남쪽은 우리 영토이므로 비록 군사적인 부분은 유엔사가 관할한다 하더라도 평화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태용 위원님께서 통일부와 구체적으로 DMZ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법안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환경부나 문화재청 등 부처 간 협의회가 중요하므로 부처 간 협의회가 좀 더 진행된 후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이게 제정법이기는 합니다만 벌써 이미 두 번 법안심사를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문승현 저희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신중검토 입장인데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 데 나와 있듯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련 부처 의견을 다 받고 설득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무부, 환경부, 국방부, 행안부 다 유보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전협정 사항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간에 조금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해서는 유엔사에 권한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효성이 특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 2년 전에 법안소위 했을 때 그때는 협의회 안 된 부처는 환경부하고 문화재청만 있고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는 협의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 다 백지화하고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통일정책실장 김병대입니다.

이게 이제 2차 법안소위 이후에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랄지 환경부랄지 여러 부처에서 좀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걸 위원 아니, 같은 21대 국회 외통위에서 이어서 논의하는 건데 이것 그때 협의회가 완벽히 4개 부처하고 끝났다고 했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 뒤집어도 됩니까?

○**통일부차관 문승현** 실장이 한번 답변을 좀 드리시지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DMZ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상황도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 부처가 신중한 입장으로……

○**김홍걸 위원** 아니, 그런데 남북관계 상황이라고 그러셨는데 남북 협력을 노력해야 한다, 남북 공동번영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내용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유엔사 부분도 군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엔사가 우리한테 일일이 간섭할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간섭하면 주권 침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유엔사하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위원님 말씀처럼 유엔사 권한과 관련해서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율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논의가 있었습시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에 다시 의견을 조희한 결과 이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정전협정상 유엔사 권한 자체를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 유엔사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유엔사와 과거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 법안 자체라기보다는 남북 간 교류·협력하면서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만……

○**김홍걸 위원** 아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김상희 위원** 계속 심사하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없으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시지요.

위원들 인원 구성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됐나요, 통일부?

○**통일부차관 문승현** 그동안 기획관리실장이 본부 관련 부처 또 법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명수** 예.

○**통일부기획조정실장 황정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일단 하 의원님 입법 취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온정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귀책사유 없이 공공기관으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공기관 이유로 채무면제를 못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됐고요. 대출원리금이 지금 원금 850억에서 이자도 좀 는 상황인데 정부가 매년 상환유예는 해 주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채무면제를 법으로 할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채권에 대한 일반적 면제권이 너무나 완화됩니다. 차라리 국가채권법에 이 조항 귀책사유 없이 이렇게 할 경우 면제요건을 넣는다고 한다면 모법이 되지만 여기에서 넣으면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너무 완화돼서 법질서를 어그러뜨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내 이견이 너무 큼니다.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는 해 가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내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정부 이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고 동의를 안 되는 것은 이견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클 게 뭐 있어요. 남북협력 관련한 기관에만 한정되는 건데. 왜 파장이 크다고 하는 거야?

○**통일부기획조정실장 황정주** 1항에 ‘공공기관’이라고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도 충분히 논의했던 것처럼 과거에 갇았던 기업 또는 앞으로 갇을 기업들이 이 조항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너무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밖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문항 조정이라든가 나중에 좀 더 검토한 후에 저희가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항……

내가 2항 같은 경우에는 양보를 했고 1항 하나인데, 1항에 조가 4개 있는데 두 번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황희 위원 그런데 이거잖아요.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의 빚을 갚아 주는 거잖아요. 그걸 좀 축소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대자산 인수한 것 정부가 현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관광공사 끌어들여 가지고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도 거기에 뛰어들든 사기업들, 일반 기업들을 정부가 사실은 보상해 준 것이거든요. 해지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의미를 축소해서라도……

○河泰慶 위원 한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항의 조를 보면 자신의 귀책사유 없다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기업, 민간기업은 자율적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지금 관광공사 말고 없지 않아요? 또 있나요? 통일부 물어보니까 다른 데 없다는데? 그러면 이게 범위가 한정 없이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왜 한정 없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사기업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박상돈 관광공사 외에도 전력공사하고 한국광해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전력공사랑 한국광해공사?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박상돈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부채를 상환하고 있고요.

○河泰慶 위원 갚고 있고.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박상돈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거기 두 군데가 일반 사기업이 투자한 것을 떠안았나요?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박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황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여튼 하태경 의원님 발의 취지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무한정 커진다는 것은 너무 심한 과장이지. 딱 저렇게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바로 자동적으로 면제해 주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자꾸 안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고 억지로 논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황정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쪽이 아니라 관광공사도 귀책사유 없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제기가 많이 됐던 사안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희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기재부가 하면 믿겠는데 통일부가 하니까 얘기를 하나 마나지요.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박상돈 위원님,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기재부와 관련된 부서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 차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을 고쳐서 가지고 와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우려가 지나친 건데.

○황희 위원 저는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귀책사유로 인해서 일반 사기업들이 시비 걸지 않을 것 같고, 전력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한 건데 이 관광공사의 경우는 현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현대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못 뽑으니까 관광공사가 대신 대체해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하태경 의원님 입법 취지를 조금 의미를 축소하더라도 그것을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30항에 대해서는 계속 더 협의를 해서 하시고, 저희가 가만히 들으면 통일부가 이 법안 내용을 정부 제출한 것 아니고 의원 발의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말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가지고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의견 들을 것 듣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1항 그것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은 4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발전법, 북한인권법, 남북교류협력법을 남았는데요. 위원님 시간이……

○河泰慶 위원 하나만 하지요, 하나만.

○태영호 위원 이 법안도 세 건을 병합심사해야 돼요.

○김상희 위원 다음에 하지요.

○소위원장 이명수 원래 아까 말씀은 4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일정 잡을 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심의하지 못한 사항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쉽지만 이상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통일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       |       |       |       |
|-------|-------|-------|-------|
| 김 경 협 | 김 상 희 | 김 홍 결 | 이 명 수 |
| 태 영 호 | 하 태 경 | 황 희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송 병 철 |
| 전 문 위 원     | 정 홍 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             |       |
|-------------|-------|
| 제 2 차 관     | 오 영 주 |
| 인 사 기 획 관   | 황 소 진 |
| 영 사 안 전 국 장 | 정 강   |
| 국 제 기 구 국 장 | 강 주 연 |
| 개 발 협 력 국 장 | 원 도 연 |
| 국 제 법 률 국 장 | 황 준 식 |
|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 김 상 훈 |

통일부

|               |       |
|---------------|-------|
| 차 관           | 문 승 현 |
| 기 획 조 정 실 장   | 황 정 주 |
| 통 일 정 책 실 장   | 김 병 대 |
| 인 권 인 도 실 장   | 강 종 석 |
| 정 착 안 전 정 책 관 | 황 승 희 |
| 기 획 재 정 담 당 관 | 박 상 돈 |
| 남북관계관리단장      | 강 연 서 |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장

|       |
|-------|
| 추 석 용 |
| 정 병 식 |
| 조 소 영 |